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23. 6. 2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I. 회부경위 ····· 1

II. 제안이유 ····· 1

III. 예산안 편성규모 ····· 2
1. 예산안 개요 ····· 2
2. 세입예산안 ····· 3
3. 세출예산안 ····· 4

IV. 검토의견 ····· 5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5
2. 주요 검토의견 ····· 5
가. 총괄 검토 ····· 5
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 6
1) 이전수입 ····· 6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7
나) 자치단체이전수입 ····· 9
2) 자체수입 ····· 12
3) 순세계잉여금 ····· 14
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 17
1) 세출예산안 총괄 ····· 17
2) 인건비 ····· 19
3) 경상비 ····· 19
4) 사업비 ····· 20
가) 교육사업비 ····· 20
나) 시설사업비 ····· 24

5) 재무활동 및 예비비 ····· 27
6) 신규 증액 편성 사업 ····· 28
7) 세출예산안 사업 중 기정예산 감액 사업 ····· 31
라. 실·국별 사업별 검토 ····· 33
1) 기획조정실 ····· 33
가) 정책안전기획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33
나) 예산담당관-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35
2) 교육정책국 ····· 37
가) 교육혁신과-SW교육지원 ····· 37
나) 교육혁신과-초·중학교교과용도서 ····· 41
다) 교육혁신과-생태전환교육내실화 ····· 43
라) 교육혁신과-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지원 ····· 45
마) 교육혁신과-학교혁신기획운영 ····· 48
바) 유아교육과-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 ····· 51
사) 유아교육과-유보통합운영지원 ····· 53
아) 초등교육과-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 ····· 56
자) 초등교육과-협력학습 참여적수업지원 ····· 60
차) 중등교육과-원격교육지원 ····· 62
카) 중등교육과-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 68
3) 평생진로교육국 ····· 71
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학교폭력예방대책 ····· 71
나) 민주시민생활교육과-민주시민교육강화 ····· 75
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세계시민교육역량강화 ····· 78
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인권교육활성화 ····· 80
마) 민주시민생활교육과-통일교육활성화지원 ····· 84
바) 진로직업교육과-특성화고지원 ····· 86
사) 진로직업교육과-맞춤식진로교육 ····· 88
아) 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90
5) 교육행정국 ····· 91
가) 학교지원과-학교신설 ····· 92

나) 교육재정과-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운영비지원 ····· 95
다) 교육시설안전과-안전관리(석면제거) ····· 98
5) 직속기관 ····· 101
가) 학생체육관-체육연수지원 ····· 101

[별첨]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 10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0

2023년 6월 27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3.6.21.) 상정 및 질의·토론
제5차 교육위원회(2023.6.22.) 질의·토론
제6차 교육위원회(2023.6.23.) 질의·토론
제7차 교육위원회(2022.6.27.) 의결(수정가결)

Ⅱ. 제안이유

○ 2022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및 2023년도 감액분과 외부목적재원 교부 등에 따른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고, 주요 교육시책사업 및 시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Ⅲ.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금액(A-B)	비율
총 규 모		**13,553,736**	**100.0**	**12,879,806**	**673,930**	**5.2**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7,257,233**	53.5	**7,156,803**	**100,430**	1.4
	자치단체이전수입	4,740,286	35.0	4,187,778	**552,508**	13.2
	기타이전수입	12,553	0.1	8,067	4,486	55.6
	자체수입	202,012	1.5	126,383	75,629	59.8
	전년도이월금	1,324,991	9.8	1,385,345	△60,354	△4.4
	금융자산회수	16,661	0.1	15,430	1,231	8.0
세출	인건비	6,700,796	49.4	6,734,877	△34,081	△0.5
	기관운영비	39,363	0.3	39,303	60	0.2
	학교운영비	1,025,953	7.6	1,014,516	11,437	1.1
	교육사업비	2,878,112	21.2	2,502,028	376,084	15
	시설사업비	1,458,962	10.8	1,136,187	322,775	28.4
	재무활동	1,384,491	10.2	1,234,491	150,000	12.2
	예비비및기타	66,059	0.5	218,404	△152,345	△69.8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3,553,736**	**100**	**12,879,806**	**673,930**	**5.2**	**364,016**	**△1,117**	**311,031**
중앙정부이전수입	보통교부금		6,362,253	46.9	6,362,253	0	0.0	0	0	0
	특별교부금		198,425	1.5	120,072	78,353	65.3	0	△562	78,915
	증액교부금		162,753	1.2	162,753	0	0.0	0	0	0
	국고보조금		43,302	0.3	21,225	22,077	104.0	0	0	22,077
	특별회계전입금		490,500	3.6	490,500	0	0.0	0	0	0
	계		**7,257,233**	53.5	**7,156,803**	**100,430**	1.4	**0**	**△562**	**100,992**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지방교육세	1,946,119	14.4	1,926,002	20,117	1.0	20,117	0	0
		담배소비세	284,424	2.1	261,992	22,432	8.6	22,432	0	0
		시도세	2,113,330	15.6	1,806,223	307,107	17.0	307,107	0	0
		학교용지부담금	1,988	0.0	1,988	0	0.0	0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4,151	0.9	116,297	△2,146	△1.8	△2,146	0	0
		교육급여보조금	10,424	0.1	10,424	0	0.0	0	0	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5,258	0.0	15,258	0	0.0	0	0	0
		소계	4,485,694	33.1	4,138,184	347,510	8.4	347,510	0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155,345	1.2	30,515	124,830	409.1	0	△315	125,145
		기초자치단체	99,247	0.7	19,079	80,168	420.2	0	△240	80,408
		소계	254,592	1.9	49,594	204,998	413.4	0	△555	205,553
	계		**4,740,286**	35.0	**4,187,778**	**552,508**	13.2	**347,510**	**△555**	**205,553**
기타이전수입(지원금)			**12,553**	0.1	**8,067**	**4,486**	55.6	**0**	**0**	**4,486**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294	0.0	1,319	△25	△1.9	△25	0	0
	행정활동수입		5,306	0.0	5,341	△35	△0.7	△35	0	0
	자산수입		30,852	0.2	33,573	△2,721	△8.1	△2,721	0	0
	이자수입		36,410	0.3	11,819	24,591	208.1	24,591	0	0
	기타수입		128,150	1.0	74,331	53,819	72.4	53,819	0	0
	계		**202,012**	1.5	**126,383**	**75,629**	59.8	**75,629**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기타	전년도이월금		1,324,991	9.8	1,385,345	△60,354	△4.4	△60,354	0	0
	금융자산회수		16,661	0.1	15,430	1,231	8.0	1,231	0	0
	계		**1,341,652**	9.9	**1,400,775**	**△59,123**	△4.2	**△59,123**	**0**	**0**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3,553,736**	**100**	**12,879,806**	**673,930**	**5.2**	**364,016**	**△1,117**	**311,031**
인건비	공 무 원		4,469,070	32.9	4,496,370	△27,300	△0.6	△27,300	0	0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920,224	6.8	927,005	△6,781	△0.7	△6,781	0	0
	사 립 학 교		1,311,502	9.7	1,311,502	0	0.0	0	0	0
	계		**6,700,796**	**49.4**	**6,734,877**	**△34,081**	**△0.5**	**△34,081**	**0**	**0**
경상비	교육행정기관 운 영 비		39,363	0.3	39,303	60	0.2	60	0	0
	학교운영비	공 립	741,136	5.5	741,136	0	0.0	0	0	0
		사 립	284,817	2.1	273,380	11,437	4.2	11,437	0	0
		소 계	1,025,953	7.6	1,014,516	11,437	1.1	11,437	0	0
	계		**1,065,316**	**7.9**	**1,053,819**	**11,497**	**1.1**	**11,497**	**0**	**0**
사업비	교육사업비		2,878,112	21.2	2,502,028	376,084	15.0	126,848	△1,117	250,353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96,303	0.7	62,121	34,182	55.0	34,182	0	0
		일반시설	1,276,061	9.4	1,004,594	271,467	27.0	214,490	0	56,977
		급식시설	86,598	0.7	69,472	17,126	24.7	13,425	0	3,701
		소계	1,458,962	10.8	1,136,187	322,775	28.4	262,097	0	60,678
	계		**4,337,074**	**32.0**	**3,638,215**	**698,859**	**19.2**	**388,945**	**△1,117**	**311,031**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 등		52	0.0	52	0	0.0	0	0	0
	B T L 상 환		0	0.0	0	0	0.0	0	0	0
	기 금 전 출 금		1,384,439	10.2	1,234,439	150,000	12.2	150,000	0	0
	계		**1,384,491**	**10.2**	**1,234,491**	**150,000**	**12.2**	**150,000**	**0**	**0**
예비비 및 기타			66,059	0.5	218,404	△152,345	△69.8	△152,345	0	0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추경예산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920호로 제출되어 2023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고, 202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2조 8,798억 6백만원)보다 6,739억 3천 만원(5.2%)이 증액편성된 13조 5,537억 3천 6백만원입니다.

[표-1]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A-B)		재원구분	
		금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13,553,736	12,879,806	673,930	5.2	364,016	309,914

○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 8백만원, 기타이전수입 44억 8천 6백만원, 자체수입 756억 2천 9백만원 등 7,330억 5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전년도이월금을 포함한 기타 세입 △591억 2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총 6,739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340억 8천 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23억 4천 5백만원 등 △1,864억 2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경상비 114억 9천 7백만원, 교육사업비 3,760억 8천 4백만원, 시설사업비 3,227억 7천 5백만원, 기금전출금 1,500억원 등 8,603억 5천 6백만원 증액되어 총 6,739억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증액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경예산의 본예산 대비 연평균 증가율인 17.3% 대비 약 1/3 이상 축소된 규모(5.2%)이나,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연평균액 11조 4,808억 8천 2백만원 대비 2조 728억 5천 4백만원 (18.1%) 확대된 규모라 하겠습니다.

[표-2]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추경 증감액과 증감률

(단위 : 백만원, %)

연도	추경예산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비율
			일반재원	목적재원	계	
2022	14,373,020	10,588,635	3,377,164	407,221	3,784,385	35.7
2021	11,583,632	9,741,994	1,519,177	322,461	1,841,638	18.9
2020	10,556,352	10,084,661	69,797	401,894	471,691	4.7
2019	11,005,898	9,380,315	1,393,822	231,761	1,625,583	17.3
2018	9,885,510	9,151,267	540,378	193,865	734,243	8.0
평균	**11,480,882**	**9,789,374**	**1,380,068**	**311,440**	**1,691,508**	**17.3**
2023	**13,553,736**	**12,891,521**	**336,048**	**326,168**	**662,216**	**5.2**

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1) 이전수입

○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574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확정된 보통교부금을 제외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1,004억 3천만원)과 광역 및 자치구의 법정, 비법정 전입금인 자치단체이전수입(5,525억 8백만원), 그리고 기타이전수입(44억 8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가) 중앙정부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7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723,431**	**49.6**	**6,645,078**	**78,353**	**1.2**	**0**	**△562**	**78,915**
보 통 교 부 금	6,362,253	46.9	6,362,253	0	0.0	0	0	0
특 별 교 부 금	**198,425**	**1.5**	**120,072**	**78,353**	**65.3**	**0**	**△562**	**78,915**
증 액 교 부 금	162,753	1.2	162,753	0	0.0	0	0	0
국 고 보 조 금	**43,302**	**0.3**	**21,225**	**22,077**	**104.0**	**0**	**0**	**22,077**
특별회계전입금	490,500	3.6	490,500	0	0.0	0	0	0
계	**7,257,233**	53.5	**7,156,803**	**100,430**	1.4	**0**	**△562**	**100,992**

○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1,984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00억 7천 2백만원보다 783억 5천 3백만원(65.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국가시책수요 58개 사업(410억 8천 2백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 10개 사업(378억 3천 3백만원)에 대해 789억 1천 5백만원이 목적지정재원으로 우선확정 되었으나, 교원자유학년(학기)수업지

원 등 5개 사업에서 5억 6천 2백만원을 감액 교부함에 따라 이를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1)]

[표-3] 특별교부금 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특별교부금 (추경편성)	교육과정운영지원	교원자유학년(학기)수업지원	0	9	△9
	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	3,670	3,919	△249
	특색교육과정운영	고교학점제도입운영지원 -시도분담금	800	1,290	△49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보장선도시범학교운영	1,900	2,025	△125
	현장중심장학지원	EBS수능강의운영지원	807	937	△130
	소 계(5건)		7,177	8,180	△562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433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2천 5백만원보다 220억 7천 7백만원(104%)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급여지원금 등 5개 사업 이외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지원 등 7개 사업 220억 7천 7백만원이 목적지정재원으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표-4]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명	성립전 우선사용	우선 확정일
국 고 보조금	도 서 관 운 영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지원	48	03-17
	도 서 관 운 영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100	03-30
	도 서 관 운 영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20	03-29
	도 서 관 운 영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5	04-11
	도 서 관 운 영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140	04-28
	교육과정운영지원	창의발명교실 운영 등	45	04-26
	학교시설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21,719	05-09
	소 계 (7건)		**22,077**	

1) 추경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 내역은 [붙임1] 참고.

나) 자치단체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7~12쪽)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 사유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4,740,286**	**4,187,778**	**552,508**	13.2	**347,510**	**△555**	**205,553**	
법정이전수입	4,485,694	4,138,184	347,510	8.4	347,510	0	0	
지방교육세전입금(전액)	1,946,119	1,926,002	20,117	1.0	20,117	0	0	22년 정산분 23년서울시 추경감액
담배소비세전입금(45%)	284,424	261,992	22,432	8.6	22,432	0	0	22년 정산분
시도세전입금(10% 및 보전분)	2,113,330	1,806,223	307,107	17.0	307,107	0	0	22년 정산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988	1,988	0	0.0	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14,151	116,297	△2,146	△1.8	△2,146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반영
교육급여보조금	10,424	10,424	0	0.0	0	0	0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15,258	15,258	0	0.0	0	0	0	
비법정이전수입	254,592	49,594	204,998	413.4	0	△555	205,55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55,345	30,515	124,830	409.1	0	△315	125,145	우선확정분 및 감액분 반영
기초자치단체전입금	99,247	19,079	80,168	420.2	0	△240	80,408	우선확정분 및 감액분 반영

① 법정이전수입

○ 금번 추경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75억 1천만원이 증가한 4조 4,856억 9천 4백만원(8.4%)이 편성되었습니다.

○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세 수입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되는 세입재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22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전입금 정산분 1,276억 1천 6백만원의 증액과 2023년

서울시의 세수 감소[2]에 따른 2023년 지방교육세전입금 예상 편성 예정액 △1,075억원 감액을 반영하여 총 201억 1천 6백만원이 증액(1.0%)된 1조 9,461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전입금'은 2022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24억 3천 2백만원(8.6%)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세전입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3]으로 시·도교육청 안분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차액과 2022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071억 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5]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분액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종전	개정	차액
[별표3]'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금' 시도교육청 안분액	36,228	36,209	△19
[별표5]'국가 지방이양사업보전금' 시도교육청 안분액	8,887	24,722	15,835

○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4]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교부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1억 4천 6백만원 감액된 1,141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2) '2023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목적세-지방교육세' △107,500,000천원

3)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 3. 14., 일부개정]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② 비법정이전수입

○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5]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은 3월부터 8월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전입금 1,959억 9천 4백만원과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사업(5개사업)’ 및 교육과정운영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등 95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입학준비금’ 분담금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인원수 조정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금이 △5억 5천 5백만원 감액되었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2,049억 9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6] 비법정전입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부사업	사업내역	추경편성액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대 안 교 육 운 영	대안교육기관지원	7,000
	학 교 급 식 운 영	3~8월 친환경유치원 급식비(서울시)	10,981
	학 교 급 식 운 영	3~8월 친환경 급식비(서울시)	106,039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1차특별교육경비보조)	75
	학교시설환경개선	기타사업(1차특별교육경비보조)	811
	학교시설환경개선	도장공사(1차특별교육경비보조)	90
	학교시설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1차특별교육경비보조)	150
	교 육 비 지 원	입학준비금지원	△315
	소 계 (8 건)		124,830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 교 급 식 운 영	3~8월 친환경유치원 급식비(자치구)	7,321
	학 교 급 식 운 영	3~8월 친환경 급식비(자치구)	71,654
	교육과정운영지원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1,397
	교육과정운영지원	마을속과학체험	25
	평 생 학 습 운 영	계속교육과정운영(마포평생학습관)	10
	교 육 비 지 원	입학준비금지원	△240
	소 계 (6 건)		80,168

5)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 기타이전수입(사업별 설명자료 13~14쪽)

○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은 「2023년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사업 협약 체결 결과 안내」(한국과학창의재단 SWAI인재양성팀-1054, 2023.4.14.)에 따른 ‘2023년 AI교육 선도학교 지원’을 위해 5억 3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 디지털 문해학습장 보조금’이 노원평생학습관과 고덕평생학습관에 각각 7백만원씩 지원됨에 따라 1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기타이전수입 중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에 따른 시·도교육청 분담금 39억 3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자체수입(사업별 설명자료 17~27쪽)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02,012**	**126,383**	**75,629**	**59.8**
교수학습활동수입	1,294	1,319	△25	△1.9
행정활동수입	5,306	5,341	△35	△0.7
자산수입	30,852	33,573	△2,721	△8.1
이자수입	36,410	11,819	24,591	208.1
기타수입	128,150	74,331	53,819	72.4

○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체수입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등 시설의 공사(리모델링)로 인한 휴관과 학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생 감소 등으로 인해 교수학습활동수입과 행정활동수입이 총 6천만원 감액되

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용산구 일대 서울시교육청 소유 토지 매각으로 인한 토지 임대료 수입 감액분 7천 7백만원과 일반재산 중 토지매각 감액분 33억 9천 1백만원[6] 등 34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청담고의 서초구 이전에 따른 서울시와의 재산이관[7]의 차액분 7억 4천 6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27억 2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한편 '이자수입'은 금고약정 개선을 통한 4%대 정기예금 운용 확대 및 공금예금 금리 인상 등의 노력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억 9천 1백만원(208.1%) 증액된 364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회계연도 종료 이후 사용잔액에 대한 학교회계전출금 및 보조금 등의 반납금 수입(기타수입등)이 기정예산 대비 538억 1천 9백만원(72.4%) 증액된 1,28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체수입은 서울시교육청의 개선 노력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56억 2천 9백만원(59.8%) 증가한 2,020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세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구조상 자체수입 비율은 여전히 전체 예산 대비 1.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세입여건의 불안정성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수납액 및 연체료 등의 제재금수입의 불납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6)- 대　　상: 일반재산(용산구 보광동 3-14 등 64필지) 토지매각
- 추경금액: △3,390,604천원
- 사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강행규정을 근거로 한남3구역 일반재산(토지)의 정비기반시설(도로)을 무상양도하여, 토지 매각면적 감소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감액

7) - 대　상: 청담고 이전 관련 회계간 재산 이관 차액분
- 추경금액: 746,000천원
- 사　　유: 청담고 이전 관련 서울시와 회계 간 재산이관(청담고 부지↔잠원동 체비지)에 따른 차액 정산액 중 당해연도 납입분 증액(총 65,300,000천원 중 746,000천원(10회 분납분 중 1회분))
※ 2023~2032년까지 10회·10년에 걸쳐 납입되며, 2회분(2024년)부터는 잔액 균등 납입 예정

3) 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사업별 설명자료 31쪽)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341,652**	**1,400,775**	**△59,123**	△4.2
전년도이월금	1,324,991	1,385,345	△60,354	△4.4
순세계잉여금	1,321,431	1,385,345	△63,914	△4.6
보조금사용잔액	3,560	-	3,560	100.0
금융자산회수	16,661	15,430	1,231	8.0

○ 금번 추경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2022년도) 결산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39억 1천 4백만원이 감액된 1조 3,214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8] 따라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6년간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나,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 법정전입금이 당초 순세계잉여금 추계시 세입전망액보다 감액되어 징수결정됨[9]에 따라 그 차이만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

8)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9) '22년 11월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전출 예정 알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7005.(2022.12.22.)
- 전출금액 : 142,594,000,000원
- 전출내역

[표-7]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최종예산	5,054	5,152	7,699	3,811	3,263	4,613	4,932
본 예 산	3,119	5,068	6,718	5,233	2,806	3,243	4,364
비 율	61.7	98.4	87.3	137.3	86	70.3	**88.5**

○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세입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산 전 미리 이를 세입에 편성한 것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한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결산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과다계상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세입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산 전 미리 이를 세입에 편성한 것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한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결산전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과다계상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에 결산을 통해 발생하는 정확한 규모의 세계 잉여금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2예산현액 (A)	전출액			전출잔액 (A-B)	전출률 (B/A*100)
			계(B) (C+D)	기전출액 (C)	금회전출액 (D)		
계		4,672,688	4,467,627	4,325,033	142,594	205,061	95.6
	지 방 세	2,166,629	2,166,629	2,166,629	0	0	100.0
	담배소비세	281,202	266,449	244,244	22,205	14,753	94.8
	지방교육세	2,224,857	2,034,549	1,914,160	120,389	190,308	91.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어려운 교육청 예산 사정을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본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세수 증대로 인한 세입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9,700억원의 재원이 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도 1조 2,897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바, 확정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22	2021	2020
예산현액	14,929,457	12,162,448	11,255,880
집행잔액	1,512,710	418,260	301,105
집행잔액율	10.1	3.4	2.7

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1)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액(C=A-B)	증감률(C/B)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편성	우선확정
합계		**13,553,736**	**100.0**	**12,879,806**	**100.0**	**673,930**	**5.2**	**364,016**	**△1,117**	**311,031**
인건비		**6,700,796**	**49.4**	**6,734,877**	**52.3**	**△34,081**	**△0.5**	**△34,081**	**0**	**0**
경상비	**계**	**1,065,316**	**7.9**	**1,053,819**	**8.2**	**11,497**	**1.1**	**11,497**	**0**	**0**
	기관운영비	39,363	0.3	39,303	0.3	60	0.2	60	0	0
	학교운영비	1,025,953	7.6	1,014,516	7.9	11,437	1.1	11,437	0	0
사업비	**계**	**4,337,074**	**32.0**	**3,638,215**	**28.2**	**698,859**	**19.2**	**388,945**	**△1,117**	**311,031**
	교육사업비	2,878,112	21.2	2,502,028	19.4	376,084	15.0	126,848	△1,117	250,353
	시설사업비	1,458,962	10.8	1,136,187	8.8	322,775	28.4	262,097	0	60,678
재무활동	**계**	**1,384,491**	**10.2**	**1,234,491**	**9.6**	**150,000**	**12.2**	**150,000**	**0**	**0**
	지방채상환	52	0.0	52	0.0	0	0.0	0	0	0
	BTL 상환	0	0.0	0	0.0	0	0.0	0	0	0
	기금전출금	1,384,439	10.2	1,234,439	9.6	150,000	12.2	150,000	0	0
예비비 및 기타	**계**	66,059	0.5	218,404	**1.7**	△152,345	△69.8	△152,345	0	0
	예비비	20,000	0.2	20,000	0.2	0	0	0	0	0
	반환금	46,060	0.3	0	0	46,060	100.0	46,060	0	0
	내부유보금	0	0	198,404	1.5	△198,404	△100.0	△198,404	0	0

○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39억 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재원은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의 우선확정 사용분 3,110억 3천 1백만원과 추경에 편성된 목적지정지원금 감액분 △11억 1천 7백만원을 제외한 3,640억 1천 6백만원으

로 기정예산 대비 2.8% 증액되었습니다.

- 그러나 일반재원 중 1,500억원이 기금전출금에 편성되었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실제 세출사업별 가용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2,140억 1천 6백만원입니다.

○ 이러한 가용재원의 세출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원과 계약제교직원 인건비’가 273억원, 67억 8천 1백만원 각각 감액되어 총 340억 8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경상비’는 ‘기관운영비’와 ‘사립학교운영비’가 각각 6천만원 및 114억 3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3,760억 8천 4백만원, 3,227억 7천 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우선확정사업 등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은 1,268억 4천 8백만원, 2,620억 9천 7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특히 교육사업비의 경우 일반재원 1,268억 4천 7백만원 중 ‘ICT 활용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내년도 고2학생 및 선도학교 대상 ‘디벗 및 충전함 보급’ 사업예산 1,059억 2천 6백만원,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20억 4천만원, ‘창의융합과학실험실 구축’ 16억 5천 4백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초등돌봄교실운영’ 44억원, ‘학급설치지원’ 33억 3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 그리고 ‘재무활동’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전액(1,984억 4백만원)이 감액되고, 반환금이 460억 6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인건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A-B)	증감률
인건비	공 무 원 인 건 비	4,469,070	4,496,370	△27,300	△0.6
	교육공무직원 및 계 약 제 교 직 원	920,224	927,005	△6,781	△0.7
	사 립 학 교 인 건 비	1,311,502	1,311,502	0	0.0
	소계	**6,700,796**	**6,734,877**	**△34,081**	**△0.5**

○ 금번 추경예산안의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40억 8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공무원 인건비’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12억 1천 9백만원)과 이에 따른 법정부담금(2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퇴직수당부담금[10] 소요예산의 정정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287억 6천 8백만원)에 따라 총 27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의 인원 감소에 따른 보수 감액과 20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입 후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67억 8천 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 경상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A-B)	증감률
경상비	교육행정기관운영비		39,363	39,303	60	0.2
	학교운영비	공 립	741,136	741,136	0	0.0
		사 립	284,817	273,380	11,437	4.2
		소 계	1,025,953	1,014,516	11,437	1.1
	소계		1,065,316	1,053,819	11,497	1.1

10)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되는 급여로서 민간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급여임.

○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상비’는 기관운영비 6천만원과 자사고 및 외국어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업 114억 3천 7백만원 등 총 114억 9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기관운영비’는 2023년 7월 1일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등으로 관련 부서 운영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산정시 ‘4-나. 계층간 균형 교육비’ 항목에 측정 단위별 구분없이 총액으로 교부[11]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 등에 해당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4) 사업비

가) 교육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		기정예산 (B)	증감 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 (C=A-B)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합 계	2,878,112	100	2,502,028	376,084	15.0	126,848	△1,117	250,353
인적자원운용	69,811	2.4	67,403	2,408	3.6	665	0	1,743
교수학습활동지원	819,804	28.5	653,332	166,472	25.5	120,962	△562	46,072
교 육 복 지	794,666	27.6	790,945	3,721	0.5	845	△555	3,431
보 건 급 식	961,546	33.4	762,082	199,464	26.2	2,447	0	197,017
평 생 교 육	35,769	1.3	35,542	227	0.6	△110	0	337
교육행정일반	196,516	6.8	192,724	3,792	2.0	2,039	0	1,753

11)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3.2. 11쪽 참조

○ 금번 추경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760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선확정사업 등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은 1,268억 4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우선 ‘인적자원운용’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4억 8백만원이 증액(3.6%) 편성되었는바, 이는 예비 교원에 대한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확대를 위한 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7억 3천 9백만원)과 AI디지털 교원역량강화(5억 2천만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3억 6천 4백만원)등 특별교부금에 따른 우선확정사업 등이 17억 4천 3백만원 증가하였고,

공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 지급단가 인상[12](3억 7천 4백만원)과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비(2억 5천 8백만원) 등 일반재원이 6억 6천 5백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664억 7천 2백만원이 증액(25.5%) 편성되었는바, 이는 고등학교 학생(‘24년 고2) 및 교원 스마트 기기 등 지급을 위한 디지털환경조성(1,059억 2천 6백만원), 인공지능기반 맞춤형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사업(78억 1천만원), 서울형마이스터고 운영(20억 4천만원), 창의융합 과학실험실 환경구축(16억 6천 4백만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2천 1백만원이 증액(0.5%) 편성되었는바, 이는 방역체계 조정에 따른 교육활동 정상화로 코로나19 돌봄 운영비(△44억원)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지원(34억 3천 8백만원)하고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32억 2천 7백만원), 저녁돌봄학교(18억 5천 6백만원/특교)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12)「서울특별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교육훈련 제215호, 2023.4.27.)
- 유·초등 교사에 대한 교원연구비 인상(5천원)

[표-9] 교육복지사업 증감액 사업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증감액 (A-B)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226,885	223,164	3,721	1.7%	845	3,431	△555
수익자부담경비지원	8,443	5,005	3,438	68.7%	3,438	-	-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27	-	3,227	-	3,227	-	-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특별교부금)	1,856	-	1,856	-	-	1,856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특별교부금)	996	-	996	-	-	996	-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	1,445	667	778	116.7%	778	-	-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2,946	2,444	502	20.5%	502	-	-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 (특별교부금)	212	-	212	-	-	212	-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운영 (특별교부금)	150	-	150	-	-	150	-
다문화학생지원	5,450	5,306	144	2.7%	144	-	-
다문화탈북학생지원 (특별교부금)	1,295	1,174	121	10.3%	-	121	-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474	378	96	25.4%	-	96	-
유아학비부대경비	240	167	73	43.4%	73	-	-
교육급여지원	7,606	7,573	33	0.4%	33	-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136	118	18	14.6%	18	-	-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운영	13	21	△8	△38.0%	△8	-	-
초,중학교교과용도서	58,795	58,943	△148	△0.3	△148	-	-
입학준비금지원 (서울시전입금)	16,953	17,268	△315	△1.8%	-	-	△315
인터넷통신비지원	3,431	3,899	△468	△12.0%	△468	-	-
입학준비금지원	39,799	40,533	△734	△1.8%	△494	-	△240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9,210	10,131	△921	△9.1%	△921	-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	17,652	18,581	△929	△5.0%	-929	-	-
초등돌봄교실운영	46,556	50,956	△4,400	△8.6%	△4,400	-	-

○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994억 6천 4백만원이 증액(26.2%) 편성되었는바, 이는 무상급식 지원(3월~8월)을 위한 식품관리비 및 인건비 등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입금 우선확정분(1,959억 9천 4백만원)과 학생건강검진 결과관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시도분담금(10억 7천만원) 및 급식종사자 폐암건강진단(3억 9천 7백만원)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 7백만원이 증액(0.6%) 편성되었는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업예산 감액(5억 3천 3백만원)에도 불구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5억 3천 5백만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9천 2백만원이 증액(2.0%) 편성되었는바, 이는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지원 등을 위한 학급설치지원 사업이 학교의 신청 감소에 따라 사업예산을 감액(33억 3백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개방학교 수 확대로 인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64억 6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		기정예산	증감 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재원별		
								일반재원	목적재원	
									추경	우선확정
합 계			**1,458,962**	**100**	**1,136,187**	**322,775**	**28.4**	**262,097**	**0**	**60,678**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81,738	5.6	50,405	31,333	62.2	31,333	0	0
		교실증축	14,565	1.0	11,716	2,849	24.3	2,849	0	0
		소 계	**96,303**	**6.6**	**62,121**	**34,182**	**55.0**	**34,182**	**0**	**0**
시설개선	일반시설	학교시설증개축	38,003	2.6	31,165	6,838	21.9	6,838	0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72,555	80.4	912,349	260,206	28.5	207,229	0	52,977
		기관시설유지관리	65,503	4.5	61,080	4,423	7.2	423	0	4,000
		소 계	**1,276,061**	**87.5**	**1,004,594**	**271,467**	**27.0**	**214,490**	**0**	**56,977**
	급식시설	신규학교조리기구구입	6,020	0.4	4,572	1,448	31.6	1,448	0	0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22,147	1.5	21,340	807	3.8	807	0	0
		급식시설보수	25,805	1.8	15,172	10,633	70.1	6,932	0	3,701
		급식시설신증축	32,626	2.2	28,388	4,238	14.9	4,238	0	0
		소 계	**86,598**	**5.9**	**69,472**	**17,126**	**24.7**	**13,425**	**0**	**3,701**
	계		**1,362,659**	**93.4**	**1,074,066**	**288,593**	**26.9**	**227,915**	**0**	**60,678**

○ 금번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227억 7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학교 신·증설(341억 8천 2백만원)’과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 개선 등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2,602억 6백만원’)와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106억 3천 3백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특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 대비 2,602억 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해소,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에 동 사업예산의 36%인 937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위한 공·사립학교 22개교의 설계공모보상비와 공립 26개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일반재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12억 8천 4백만원과 217억 1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표-10]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내 역			
					일반재원		목적지정지원금	
	물량	예산	물량	예산안 (C=A+B)	금액	구성비	우선 확정	추경 편성
합계	3,576	912,349	741	260,206	207,229	79.6%	52,977	0
화장실개선(전면)	153	46,201	18	4,533	4,533	100.0%	0	0
화장실개선(부분)	15	4,533	1	799	799	100.0%	0	0
전기시설개선	141	19,620	58	8,224	8,074	98.2%	150	0
냉난방개선	375	78,277	69	14,983	14,983	100.0%	0	0
창호개선	337	107,633	28	9,113	8,821	96.8%	292	0
외벽개선	115	74,406	12	5,825	5,223	89.7%	602	0
소방시설개선	73	15,206	5	1,395	1,395	100.0%	0	0
방수공사	259	35,306	37	5,082	4,609	90.7%	473	0
바닥개선	168	59,207	9	4,302	2,801	65.1%	1,501	0
도장공사	208	20,730	24	2,237	1,843	82.4%	394	0
외부환경개선	145	13,632	20	4,537	2,535	55.9%	2,002	0
기타사업	1,241	187,545	179	64,318	38,855	60.4%	25,463	0
장애인편의시설	108	29,278	89	9,396	9,015	95.9%	381	0
안전관리(내진보강)	3	26,691	2	34,900	34,900	100.0%	0	0
안전관리 (샌드위치판넬제거)	13	1,377	1	250	250	100.0%	0	0
안전관리 (드라이비트해소)	160	51,545	50	21,107	21,107	100.0%	0	0
안전관리(정밀점검)	37	22,417	91	7,097	7,097	100.0%	0	0
안전관리(석면제거)	3	47,500	3	31,200	31,200	100.0%	0	0
(꿈담)디자인혁신사업	2	30,100	-	0	0	0.0%	0	0
그린스마트스쿨	7	32,487	40	23,003	1,284	5.6%	21,719	0
노후교사개축	2	6,757	3	6,530	6,530	100.0%	0	0
적정규모육성학교 교육환경개선	11	1,901	2	1,377	1,377	100.0%	0	0

○ 이러한 ‘시설사업비’의 증액은 금번 추경예산안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것이나, 현재 ‘시설사업비’의 집행률은 18.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시설사업비’는 방학기간에 편중되어 실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로 인해 사업비의 이월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률도 73.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가 당해연도 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1] 시설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2023. 5. 30 기준)

사업명	본예산	이월액	1차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학교신증설	62,121	28,244	0	90,365	14,003	15.5%
학교시설환경개선	789,662	501,233	122,688	1,413,583	251,010	17.8%
학교시설확충	31,165	21,299	0	52,464	11,682	22.3%
학교급식환경개선	68,715	26,287	756	95,758	26,428	27.6%
합 계	951,663	577,063	123,444	1,652,170	303,123	18.3%

[표-12] 2022회계연도 시설사업비 결산 중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이월액	이월률
합 계	706,377	98,053	268,371	251,558	519,929	73.6
학교신증설	63,012	29,295	3,594	24,407	28,001	44.4
학교시설확충	31,664	8,588	6,557	14,742	21,299	67.3
학교시설환경개선	581,259	55,438	249,723	198,321	448,044	77.1
학교급식환경개선	30,442	4,732	8,497	14,088	22,585	74.2

5) 재무활동 및 예비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재 무 활 동	**계**	**1,384,491**	**10.2**	**1,234,491**	**150,000**	**12.2**	**150,000**	**0**	**0**
	지방채상환	52	0.0	52	0	0.0	0	0	0
	BTL 상환	0	0.0	0	0	0.0	0	0	0
	기금전출금	**1,384,439**	**10.2**	**1,234,439**	**150,000**	**12.2**	**150,000**	**0**	**0**
예비비 및 기 타	**계**	**66,059**	**0.5**	**218,404**	**△152,345**	**△69.8**	**△152,345**	**0**	**0**
	예 비 비	20,000	0.2	20,000	0	0	0	0	0
	반 환 금	46,060	0.3	0	46,060	100.0	46,060	0	0
	내부유보금	**0**	**0**	**198,404**	**△198,404**	**△100.0**	**△198,404**	**0**	**0**

○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1,5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523억 4천 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2022년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460억 6천만원)의 증액분과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 특히 기금전출금의 규모는 전체 추경예산안 증감 규모에서 목적지정사업예산을 제외한 자체재원 예산의(3,640억 1천 6백만원) 41.2%(1,5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의 기금 적립은 시급한 정책사업 추진의 기회

비용을 상실케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금전출금은 기금적립의 긴급성, 규모의 합리성, 사용 목적의 불명확성, 운용 제한 등의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신규 증액 편성 사업[1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부내역사업	사업내역	추경 예산안
학생안전관리	안전교육강화	o 학년말 자기계발시기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학년말자기계발시기집중교육실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며,학교로찾아가서실습중심교육으로응급상황대처능력강화 -고3학생 우선 실시 및 수요에 따라 중3학생 실시	22
학교급식운영	급식실작업환경개선및안전관리	o 2022년 학교 급식종사자 1차 검진결과 폐암의심 및 경계성결절 진단자에 대한 2차 검진비 지원 o 1차검진미수검자1차검진추진	397
교육복지우선지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o 학교-지역사회 연계 미래교육과정 운영 o 지역자원연계방과후돌봄활동통합지원 o 자치구특화사업확대 o 행정지원체계구축	3,218
특색교육과정운영	학교혁신기획운영	o 학교제안공모사업 -대상:관내초·중·고·특수학교 -기간:2023.7.~2024.2. -공모단위:80팀 (교직원5인이상팀,학급단위,학년단위,학교단위) -공모분야:학교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교육적사업	248
ICT활용교육지원	SW교육지원	o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 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디지털 교육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SW·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97
	인공지능기반맞춤형교수학습통합플랫폼	o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용역비	7,810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o 목적: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미충원된 자사고 및 외고에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액 지원으로 안정적 학교 운영 및 재학생 학습권 보호 o 대상:총27교(자사고17교,외고6교,일반고전환고(자사고 교육과정운영)4교) o 예산:11,437,243천원	11,437
유아교육운영	유보통합운영지원	o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유치원·어린이집협력네트워크 -교육·돌봄안전환경개선 -어린이집부모행복교실운영	122
교원인사관리	장애인교원업무지원	2023학년도 청각장애인 교원 문자(수어)통역 지원 사업	258

13) 신규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추경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되지 않은 사업만을 의미함.

돌봄교실운영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	지자체-학교 간 협력돌봄 2023년 '학교돌봄터(중구형 초등돌봄)' 협력사업비 추가지원	953
학력향상지원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o 중3 전환기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채움학기제 프로그램 o 온라인e-스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제공 및 온라인멘토를 활용한 온라인멘토링 실시	650
학력평가관리	평가개선장학지원	o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하여 시도교육청별 분담금 형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공통의 연수 모듈 개발	23
학생생활지도지원	통일교육활성화지원	o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o 통일교육실천사례집제작 o 교원통일교육수업나눔워크숍운영	128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교폭력예방대책	학교폭력대책심의실 추가 구축 및 시설 개선(6개 교육지원청)	511
직업교육운영	특성화고지원	o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운영 -서울형마이스터고선도학교10교 운영비: 200,000천원 *10교=2,000,000천원 -선도학교운영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및연수등운영비:38,720천원	2,040
진로진학교육운영	맞춤식진로교육	o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선도학교60교운영비 -선도학교교원역량강화연수등	312
시설사업운영	건축공간정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실시간 중계 용역	30
	건축시설관리일반	교육시설통합정보망구축 위탁운영분담금 외 분담금 4건	804
교육과정운영지원	**남산체험학습장운영**	**환율변동에 따른 천체투영기 구입 소요금액 추가비**	**30**
	체육연수지원	**장애학생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용 리프트 구입비(2대)**	**51**
교육연수운영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전국시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담당자협의회 운영비**	**11**
총 계	**21건**		**27,112**

○ 금번 추경예산안의 신규사업은 정책안전기획관의 '학생안전관리'를 포함한 21개 사업에 총 271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14]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추경예산안이라는 특성상 보충성과 시급성 및 연내집행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14)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전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남산체험학습장운영' 등 직속기관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심의조차 하지 않고 사업예산에 편성하였는바[15], 이러한 사전 검토 없이 제출된 사업들은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필요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등의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자체 심의를 거쳤음에도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대략적인 사업계획만 적시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구체적 계획이 부재한 사업예산의 편성은 단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이월 및 불용액을 발생하게 하는 등 예산편성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모든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과감한 예산 삭감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 '2023년 제2회 추경 신규사업 사전심의 결과 알림',정책안전기획과-5117. 사전심의 결과표 참조.

7) 세출예산안 사업 중 기정예산 감액 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	사업내용	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 의결내역				
			본예산 요구액 ①	증감액 ②	본예산 확정액 (B=①+②)	1차 추경액 (C)	증감액 (D=A-B-C)
정책총량관리	o 정책 사업 정비	6	10	△10	0	0	6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o 초·중학교교과용도서 재고위탁관리	530	550	△550	0	0	530
학교혁신기획 운 영	o 교육전문직원(학교 관리자) 학습공동체 운영지원	271	836	△836	0	0	271
생태전환교육 내 실 화	o 농촌유학 지원금	869	868	△336	532	0	337
협력학습참여적 수 업 지 원	o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964	2,539	△2,539	0	0	964
원격교육지원	o 고등학교 학생 ('24년 고2) 및 교원 스마트기기, 충전함 지원 o 디지털선도학교('23,'24년지정초66교, 고26교) 스마트기기,충전함지원 o 중학교충전함('23년 중2학급) 지원	135,496	92,390	△92,390	0	29,571	105,926
역 사 교 육 활성화지원	o 동아시아평화교육교류사업지원 - 사제동행 동아시아 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 동아시아 협력공동체구축을 위한 교육교류 사업	74	162	△162	0	0	74
성인권증진및 성평등정책	o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5	10	△10	0	0	5
민 주 시 민 교 육 강 화	o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 민주시민교육연수 및 워크숍운영 - 민주시민교육자료개발 보급 o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지원 - 사회현안프로젝트 학습 실천 지원 - 국회와 함께하는 서울학생사회참여한마당 o 학생봉사활동지원거버넌스구축	104	318	△318	0	0	104
세계시민교육 역 량 강 화	o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초·중·고 각 1교씩 총 3교	60	90	△90	0	0	60
인 권 교 육 활 성 화	o 학생인권증진지원, o 노동인권증진지원, o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294	738	△738	0	0	294
통 일 교 육 활성화지원	o 교원통일교육역량강화 현장체험연수	21	58	△58	0	0	21
안 전 관 리 (석면제거)	o 학교 석면제거 시설비	78,700	47,500	△33,411	14,089	33,411	31,200
그린스마트 스 쿨 운 영	o 미래학교 담당자 연수 운영 o 미래학교추진협의체운영	62	119	△119	0	0	62
교 육 연 구 개 발 지 원	o 청소년 학습주도성 및 공동체성 관련 국내외 교육전문가 초청 및 토론	129	100	△100	0	0	129
보 건 실 현대화사업	o 노후 보건실 환경 개선	1,820	1,200	△600	600	240	980

○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안 심의시 감액조정되었으나 다시 증액 편성된 사업예산은 ‘정책총량관리’ 등 16개 사업, 1,409억 5천 3백만원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살펴봐도, 이와 같이 다시 증액된 사업들이 본예산안 제출 당시와 비교해 어떤 사항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적시 없이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들의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할 만큼 시급성 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실·국별 사업에 대한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정책안전기획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업별 설명자료 43쪽~44쪽)

(단위: 천원)

구분	본예산		1차 추경예산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편성안	확정액			추경증감 (B-A)	추경예산 (B)
계	111,600	111,600	0	111,600	35,000	146,60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11,600	111,600	0	111,600	35,000	146,600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제42조[16]에 따른 법정기구로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이러한 협의회 운영 분담금과는 별개로 교육감과 수행원의 국외 교육기관 방문을 위한 특별분담금 2천 5백만원과 ‘AI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공동 추진’을 위한 특별분담금 1천만원 등 총 3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6)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해당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중 교육감과 수행원의 국외 교육기관 방문계획을 살펴보면, 명확한 방문 목적 없이 5개의 방문국 중 하나를 선택[17]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문목적, 기간 등의 정함도 없이 4~5개 교육청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각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국외 교육기관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AI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공동추진을 위한 특별부담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간의 협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18], 당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 1천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분담금을 5백만원으로 변경·요청하였는바[19], 해당 사업예산은 그 차액만큼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7) '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 교육기관 방문 계획(안)'
(방문국 선정) 북미(미국,캐나다), 서유럽(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독일), 북유럽(덴마크,필란드,스웨덴), 중부유럽(스페인,터키,포르투갈), 대양주(호주,뉴질랜드)
- 방문시기, 도시, 기관 등 세부일정은 주관교육청에서 참여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1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광주에서 「제90화 총회」개최-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23.5.18. 보도자료 참조

19)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래폼 시도교육청 공동 추진에 따른 특별분담금 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952.(2023.5.23.)

나) 예산담당관-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사업별 설명자료 92쪽~95쪽)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1차 추경예산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편성안	확정액			추경증감 (B-A)	추경예산 (B)
계	970,000	970,000		970,000	150,000	1,120,000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00	970,000	0	970,000	150,000	1,120,000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지난 본예산에 9,700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추가 적립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1,500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증액은 조례에 따른 기금 적립 재원 및 범위[20]에 포함되어 있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제3호[21]).**

---

20)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023.2.)
▶2023년도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확정 교부액
- 기준재정수요액-9.재정결함보전-다.재정안정화지원-서울: 1,546,491,770천원

21)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 그러나 동 기금전출금은 금번 추경예산안 증감액 중 목적지정 사업예산을 제외한 서울시교육청 자체재원(3,640억 1천 6백만원)의 41.2%(1,50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인바,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의 기금 적립은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시급한 정책사업 추진 및 시설환경개선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기금전출금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목적이 디지털 기반 사전 인프라의 구축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에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경편성안 목적[22]과도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이 교육청의 의존적 세입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금전출금은 기금적립의 긴급성, 규모의 합리성등의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6,739억원 규모',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3.5.31.) 내용 참조

2) 교육정책국

가) 교육혁신과-SW교육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97~199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A+B)
계	**1,418,060**	**97,000**	**1,515,060**
SW·AI캠프운영	-	97,000	97,000
사물인터넷기반교육환경조성	965,120	-	965,120
정보교육활성화지원	452,940	-	452,940

○ **“SW교육지원”은 소프트웨어·AI 및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시범학교 운영,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운영 등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4억 1천 8백만원 대비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15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은 디지털 역량이 강조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23]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SW·AI 캠프’를 시행하고자 증액되었습니다.**

○ **‘SW·AI 캠프운영’은 초·중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코딩 등을 교육·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위해 교구를 구매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당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교 사업으로 추진 중인**

23) 교육부는 2022년 12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에서 개정 중점 사압 중 하나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과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고, 학생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으로 언어 소양과 수리 소양과 함께 ‘디지털 소양’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교육 강화 기조가 전면에서 확인되고 있음.
(자료: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11.24. 참조)

디지털새싹(방학중 SW·AI교육) 캠프 참여 학생의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동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4]

○ 그러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디지털새싹(SW·AI교육)은[25]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기관(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대학과 ICT 관계 업체)이[26] 학교에 방문하거나 별도 공간을 제공하여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교구를 구입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의 효과를 근거로 삼아 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타당성이 낮다고 사료되며, 디지털새싹을 통해 넓은 의미에서 SW·AI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교당 5백만원의 예산으로 심도 있는 SW·AI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 더욱이 사업계획(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구매 교구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오렌지보드나 프로그램드론과 같은 1인 체험형 교구부터 “무선망 구축,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각종 센서 등” SW·AI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매 교구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경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의

---

2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2023-1352번(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관련) 제출자료 중 「SW·AI 캠프운영」(교육혁신과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팀) 참조.

25) 디지털새싹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디지털 교육 활성화 지원) 우선확정분 반영을 위해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58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 사항은 사업별 설명자료 200~202쪽 참조.

26) 2023년 기준, 총 31개 대학과 기업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권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와 한성대학교, 한국청소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조은에듀테크, 블루커뮤니케이션 총 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새싹 캠프 홈페이지 참조, https://newsac.co.kr/52 [검색일 2023-06-14))

본래 취지가 아닌 “SW·AI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 내용이 변질될 우려도 상존하는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1] SW·AI캠프운영 관련 구매 교구 예시[27)]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EV3	오렌지보드	프로그램드론	라즈베리파이
ㅇ AI 카메라를 활용한 vision AI를 체험할 수 있는 장비 ㅇ 무선망 구축,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각종 센서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학교자율사업운영제(舊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28)] 선택영역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 교부되는 기본운영비 안에 정보(SW, AI) 교육 실습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실효성에도 중복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즉, 이미 일선 학교 차원에서 SW·AI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동 사업이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다른 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졌는지가 불분명합니다.

---

27)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2023-1352번(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관련) 제출자료 중 「SW·AI 캠프운영」(교육혁신과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팀) 2쪽 참조.

28) 단위 부서별로 운영되는 목적사업을 일괄 안내하고 학교가 이를 자신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를 통합 교부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자율운영지원과 공동체영역(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학생자치영역운영 등 3개 사업), 선택사업 자율선택영역으로 나뉨.

[표-13] ‘23년 학교자율사업운영제 관련 SW·AI캠프와의 유사 사업 운영 현황[29)]

영역	사업명 (소관부서)	주요 사업 내용
선택사업 자율선택 영역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교육혁신과)	• 목적 : 학생 참여 중심의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및 학생 미래 역량 강화 • 내용 : 학생 참여 중심의 AI 기반 융합 프로젝트 활동 실천 및 사례 나눔
학교 기본 운영비 전환	정보(SW, AI) 교육 실습비 지원	• 2022년까지 선택영역 사업이었으나 학교 기본운영비 통합 교부운영비에 포함(교당 2백만원) • 대상 : 초중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특수학교 • 내용 : 정보교육을 위한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방과후 학교에 필요한 실습 교구 및 실습 관련 용품 등 구입 지원

○ **따라서 추경예산을 통해 급히 예산을 편성하기 사업 내용의 적정성과 유사 사업 간의 차별성, 예산교부 시 학교 단위에서 내실 있고 특화된 SW・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 사업비의 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 선택사업 자율선택 영역 관련 내용은 「2023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2.0 기본운영 계획」(교육혁신과, 2023.1.), 정보(SW, AI)교육 실습비 관련 내용은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2022.11.) 88쪽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나) 교육혁신과-초,중학교교과용도서(사업별 설명자료 209~212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58,945,620**	**△148,440**	**58,797,180**
관 외 출 장 여 비	-	-	-
업 무 관 계 자 회 의 추 진	2,080	-	2,080
인 정 도 서 관 리	2,200	10,000	12,200
초 , 중 학 교 교 과 용 도 서	58,941,340	△688,440	58,252,900
초 · 중 학 교 교 과 용 도 서 재 고 위 탁 관 리	-	530,000	530,000

○ **“초,중학교교과용도서” 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고 위탁관리 및 인정도서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589억 4천 6백만원 대비 1억 4천 8백만원 감액된 587억 9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편성에 대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과서 대금 감액과 2024학년도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 재고위탁관리 시행을 위해 일부 증액된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초 · 중학교교과용도서재고위탁관리’ 는 현재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를 민간위탁용역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 배송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교과서 구입 예산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2023학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사업을 위한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추계가 과다하고, 보관공간에 재해 · 재난이 발생하거나 물류업체 파업 등에 따른 상황 발생 시 대책이 부재하다는 등의 사유로[30] 동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을 시행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별도의 성과평가나 의회가 우려했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없이 추경예산안에 편성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의회심의를 경시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해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작성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동 사업에 대한 2024학년도 예산 편성을 2023학년도 사업의 성과평가 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31)]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실제로는 사업 시행 2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차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실행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 추진 일정과 실제 예산의 편성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표-14] 정부혁신 실행계획 상 사업 추진 일정[32)]

□ 추진일정

○ (2023. 1~2월) 교과서주문시스템 개발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 3월) 2023학년 1학기 초·중학교 전입생용 교과서 수거·보관
○ (2023. 4월) 교과서주문시스템 개통
○ (2023. 4월~12월) 전입생용 교과서 배송 실시 및 시스템 모니터링
○ (2023. 8월) 2023학년 2학기 초·중학교 전입생용 교과서 수거·보관
○ (2023. 9월) 2024학년 초·중학교 교과서 주문 실시(2023학년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 보관율 적용)
○ **(2023. 9월~12월) 2023학년 현황 분석을 통한 2024학년도 적정 예산 수립**

30)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2022.11.23.),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2022.11.29.) 73~76쪽 참조
31) 세부 사항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부혁신 실행계획(2023.5.,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의 6~9쪽을 참고.
32)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부혁신 실행계획(2023.5.,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9쪽에서 발췌.

○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5월에 작성한 동 사업의 추진 일정과도 부합하지 않고,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사업에 따른 운영 성과 역시 불투명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 교육혁신과-생태전환교육내실화(사업별 설명자료 228~230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1,415,107**	**336,600**	**1,751,707**
생태전환교육역량강화	324,690	-	324,690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347,500	-	347,500
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	742,917	336,600	1,079,517

○ **“생태전환교육내실화”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원 연수, 연구학교와 교사지원단 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예산 14억 1천 5백만원 대비 3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17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3학년도 2학기에 운영 예정인 농촌유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 **‘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 안에 편성된 농촌유학은 서울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최대 1년까지 농산어촌 소재 학교에서 농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

로, 2021년부터 시행되어 2023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에 23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22년 생태전환교육기금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농촌유학 지원금이 지출되었으나 2023년 본예산 심의 당시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 등을 이유로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전액 감액되었고, 2023년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이미 모집된 학생(가정)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2학기 참여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과 2023학년도 1학기 참여자에게 지급할 지원금 5억 3천 2백만원의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34)]

○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하고 비예산 사업 중심의 도농교육교류협력사업을 탐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와의 소통을 전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3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반대, 농촌유학 대상지의 확대 추진 등을 통해

33) 제315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2022.11.29.) 및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2.12.7.) 관련

34)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2023.3.30.),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4.10.) 등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 예산 편성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60~64쪽 참조.

35)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동 사안(농촌유학)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 질의에 교육혁신과장은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을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와 함께 "위원 요청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자세한 사항은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2023.3.31.) 회의록 참조.

동 사업의 지속 확대를 의도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심의를 경시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교육혁신과-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사업별 설명자료 238~240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	**11,437,243**	**11,437,243**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	11,437,243	11,437,243

○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에 입학생 미충원으로 발생하는 재정결손을 보존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14억 3천 7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사회통합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과[36]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37] 따라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이 의무적으로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

---

36)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7) 제17조 (사회통합전형) 영 제90조제1항제5호, 제6호의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해당 전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수업료 자율학교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 발생하는 미충원 인원 누적으로 인해 수업료와 입학료가 감소하고 결국 학교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지원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38]

○ 이에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에서 학생이 최종 모집되지 못하는 경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이 납부해야 할 만큼의 수업료와 입학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39]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왔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예산안 편성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고 보전금 지급 근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등의[40] **이유를 들어 2013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편성하지 않았고,**

2023년 자율형 사립고 존치를 포함한 학교 유형 다양화가 국정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급 지급을 위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상황입니다.

---

38) 동아일보(2022.12.14.), "[단독]서울교육청, 자사-외고에 줄 보전금 9년째 안줘… 올해만 120억", 쿠키뉴스(2014.4.6., "서울 자율형사립고 88% 미충원… 3년 미달이면 학급수 감축하고 일반고 전환" 등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4. 교육복지 지원비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4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참조

[표-15]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지급 관련 사안 개요[41)]

연월	주요 내용
2011~2012년	• 자사고 및 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지원 - '11년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 '12년은 특별교부금 50%와 자체재원 50%로 보전금을 지급
2012.12.	• 교육부 보통교부금 전환 결정 후 '201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회가 전액 감액하였음.
2013. 7.	• '2013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 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일반고로 전환한 2개교(동양고, 용문고)의 보전금을 제외한 전액이 감액되었음.
2014~2022년	•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2023. 1.	• 자사고 존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부터 지원을 결정, 지원계획을 수립
2023. 2.	• 서울시 내 자사고 교장 및 학부모,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 ※ ('23.6.14.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는 답변 기한을 2차 연장한 상황
2023. 5.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동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 **이런 점에서 동 사업은 사회통합전형 의무 시행에 따라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자사고의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2023년 2월 서울시자사고교장단연합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율형 사립고가 10여년 간 받지 못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784억여 원을 모두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만큼,[42)]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사고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1)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지급 관련 사안 개요(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내부자료, 2023.6.)

42) 베리타스알파(2023.2.1.), "조희연 '미지급 784억' 사회통합 보전금 행정소송 가나..서울자사고"즉시 지급하라"",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590 (검색일 2023-06-15); CBS노컷뉴스(2023.2.1.), "자사고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784억 지급해야"…권익위에 민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888195 (검색일 2023-06-15) 등

마) 교육혁신과-학교혁신기획운영(사업별 설명자료 254~258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8,149,792**	**540,230**	**8,690,022**
교육전문직학습공동체운영지원	-	70,560	70,560
학교관리자학습공동체운영지원	-	200,000	200,000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운영지원	332,400	-	332,400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6,283,000	-	6,283,000
학교제안공모사업운영	-	247,670	247,670
학교통합지원센터운영지원	653,048	-	653,048
학교혁신일반화지원	865,544	22,000	887,544
학교혁신지원센터운영	15,800	-	15,800

○ **“학교혁신기획운영”은 학교자율운영체제 및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통해 개별학교가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운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 81억 5천만원 대비 5억 4천만원이 증액된 86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증액은 학교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과 학교제안 공모사업 시행,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 운영 경비 확보를 위해 이뤄졌고,**

이 중 ‘교육전문직학습공동체운영지원’과 ‘학교관리자학습공동체운영지원’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의회의 예산 심의시 해당 세부내역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고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한편, 2023년 신규로 편성된 ‘학교제안공모사업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43] 통해 학교나 학급, 교직원 팀 등이 스스로 원하는 공모사업을 제안하고, 이 중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이 선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목적성 교육사업 축소를 통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지향하는 ‘학교자율사업운영제’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추진 배경과 지향점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동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44]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주도 정책의 완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기획·진행할 수 있는 교육력을 제고하고, 다변화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자치를 지원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학교 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율사업운영제’나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목적성 교육사업 축소를 지향하는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방향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43)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으로 온라인공청회나 정책 아이디어의 제안 및 평가 기능 등을 구현할 수 있으며, 공공의제에 대한 생각을 국민과 공공기관, 전문가가 함께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44)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2023-1352번(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관련) 제출자료 중 「2023「학교제안공모사업」사업 계획(안)」(교육혁신과) 참조.

[표-16] 사업별 운영목적 또는 기본방향[45)]

학교자율사업운영제	학교운영비 기본 방향	학교제안공모사업운영
○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 학교자치 지원** - 학교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학교사업 운영으로 학교자치 지원 ○ **교육환경 변화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학교사업 운영으로 질 높은 공교육 전개** - 미래교육 수요 및 학생 성장·발달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활동 전개 ○ **목적사업 운영 방식의 점진적 전환으로 학교 지원 및 업무경감 지속** - 학교자율 사업운영제를 거점으로,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로 점진적 전환 - 목적사업 운영 관련 신청·선정·결과 보고 폐지·축소로 업무경감 지속 ○ **부서 간 협업으로 교육청의 일하는 문화 개선** - 학교대상 목적사업 담당 사업부서 간 정보와 행정의 통합·공유·효율화를 통해 일하는 문화 개선	**가. 목적성 교육사업 축소** -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목적성 교육사업 편성 지양 **나. 체계적 재정집행 관리** - 교육(지원)청은 학교회계 운영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는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월률 및 불용률 최소화	○ 기존 교육청 주도 정책의 제한을 완화한 유연한 사업 공모로 학교 현장의 정책 사각지대 보완 ○ 학교별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운영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다원화되는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 주도의 자율적 역량 강화

○ 또한, 동 사업에서 제안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범위가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전반으로[46)]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45) 학교자율사업운영제는 「2023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2.0」기본운영 계획」(2023.1., 교육혁신과),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 기본방향은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2022.11.,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68쪽, 학교제안공모사업운영의 경우 「2023「학교제안공모사업」사업 계획(안)」(교육혁신과, 2023), 1쪽에서 발췌하였음.

46)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공모분야는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적 사업”으로 학

않게 설정되어 공모 과정에서 기운영 중인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와 조정을 통해 '학교자율사업운영제' 나 '학교기본운영비 운영' 등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복성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 유아교육과-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274~276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533,520**	**△399,000**	**134,520**
네트워크환경개선	533,520	△399,000	134,520

○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은 관내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3천 4백만원 대비 3억 9천 9백만원이 감액된 1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47] 따라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성

급 단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이나 학년 단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뮤지컬 운영, 학교 단위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교직원 회의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세부사항은 「2023「학교제안공모사업」사업 계획(안)」(교육혁신과, 2023), 2쪽 참조.

47)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을 담보할 수 있는 전용회선의 이용 필요성이 제기함에 따라 2022년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감액에 대해 사립유치원 주변 환경의 문제로 인해 스쿨넷 전용회선의 설치가 불가하거나 전용회선 사용으로 인해 공유 프린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신청 유치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네트워크환경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 3억 2천만원 중 74.8%인 2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48] 지적한 사항과 같이 전용회선을 통한 스쿨넷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설가상망을 활용한 방식과 같이 다른 대안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감액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획 역량 부족에 따라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동 사례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사업 기획과 사전검토 단계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8)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77~79쪽 참조.

사) 유아교육과-유보통합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280~282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	**121,650**	**121,650**
유치원어린이집 협력네트워크	-	7,500	7,500
교육돌봄안전환경개선	-	75,000	75,000
어린이집부모행복교실	-	39,150	39,150

○ **“유보통합운영지원”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2023년 5월 교육부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유보통합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함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1억 2천 2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 **“유보통합운영지원”은 크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안전시설 구축 비용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부모행복교실 운영으로 구분되며,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대로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49)]

○ **그러나 유보통합은 2025년부터 교육청과 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한다는 사항 이외에 통합기관 모델이나 자치단체와의 예산 배분 방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49)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교육부 전략기획과 663(2023.5.15.) 참조.

○ 교육부는 2023년 6월 현재까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유보통합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50] 현재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관계 법령 제·개정 계획 등이 전혀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소관 사항이 아닌 어린이집의 운영과 안전시설 개선 등을 전개함으로써 유보통합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차원에서 사업 목표와 성과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집 1개소당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별로 1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조차 부재하다면,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노후 CCTV·살균 소독기 등을 교체하는 수준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서울시에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나 과다 집행, 부적정한 회계 처리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51] 유아교육과는 세부내역사업 별 성과분석을 위해 12월 중 결과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정산(운영)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50) 교육부 보도자료(2023.6.9.),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다” 및 교육부 보도자료(2023.4.12.), “유보통합 위해 교육청-지자체 머리 맞댄다!“ 등 참조

51)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2023-1352번(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관련) 제출자료 중 「유보통합 운영지원 사업계획서」(유아교육과 유아생활교육팀) 참조.

그러나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물론, 해당 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한 주요 시책사업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연계되는 매칭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목표와 성과, 부적정 집행에 따른 통제 방안의 부재라는 문제의 해결 없이 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어린이집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4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 목표와 통제 방안 마련은 예산 편성 전 마련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예산 편성 요청에 있어 사업의 목표 및 성과 산출·예산 사용 모니터링 방안 등을 적절히 마련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먼저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초등교육과-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사업별 설명자료 305~308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679,035**	**778,288**	**1,457,323**
온종일돌봄상생기반조성사업	6,000	-	6,000
온종일돌봄상생기반조성사업(특별교부금)	6,000	-	6,000
학교돌봄터운영협력	667,035	778,288	1,445,323
방과후돌봄안전망구축	-	-	-
방과후돌봄안전망구축(특별교부금)	-	-	-

○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는 지역사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되는 학교돌봄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개되는 사업으로,**

이 중 ‘학교돌봄터운영협력’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14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예산은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돌봄서비스가 시행되는 서울시 중구의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우선, 학교돌봄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52] 따라 운영되는**

52)「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으로,[53] 공적 돌봄 확대와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일부 돌봄교실을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하던 중구가 학교돌봄터 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중구형 초등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구형 초등돌봄은 1교실 2교사제와 돌봄보안관 배치, 오전과 저녁 돌봄 제공, 수익자부담 없는 급·간식[54] 및 외부 강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초등돌봄교실보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중구 내 모든 초등학교(9개교 28실)에서 운영 중입니다.

[표-17] 중구형 돌봄과 초등돌봄교실 간의 주요 차이[55]

구분	초등돌봄교실	중구형 돌봄
운영주체	학교	구청(운영총괄), 시설관리공단(인력 및 시설관리)
운영시간	방과후부터 19시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방과 후부터 20시
외부강사 프로그램	주 5회(시간) 이내 무상	문·예·체 외부전문강사 프로그램 주3회 운영(무료)
급·간식	수익자부담 (2023년 4월부터 간식비는 무상)	무상 제공
돌봄교사	교실당 1명	교실당 2명(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돌봄보안관	없음	1명
운영예산	1실 14,000천원, 2실 17,000천원 3실 이상 실당 7,000천원 ('22년 기준 인건비 별도)	실당 연 평균 153,400천원 (인건비 84,000천원 포함)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3) 학교돌봄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었음. (보건복지부, 2023년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54) 초등돌봄교실의 간식비 지원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55) 2023년도 학교돌봄터 협력사업비 추가지원 계획(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2023.4.) [별첨 3]을 정리한 것임.

○ 그러나 2022년 11월 중구청은 서울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직영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학교돌봄터 부담금 외에 추가로 초등돌봄교실에 준하는 수준의 예산 부담을 요구하였으며,[56]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상급 기관(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을 거쳐 금번 추경예산안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이에 동 예산은 일반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비에서 중구 내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차액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표-18]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편성 세부 근거[57]

① 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 경비(인건비+운영비)		② ‘23년 학교돌봄터 분담금		차액분
1,445,323천원		**492,315천원**		
<산출 근거> 1) 운영비 - (1실) 14,000천원, (2실) 17,000천원, (3실 이상) 실당 7,000천원 - 간식비 : 1식당 2,500원 - 인건비 : ‘23년 1년 차 기준 전일제 34,291천원, 시간제(4시간) 20,216천원	-	- 운영비 : 168,000천원 - 인건비(센터장, 시간제) : 324,315천원	=	**953,008천원**

○ 우선,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편성 사유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56) 중구형 초등돌봄사업 재정지원 요청(중구청 교육아동청소년과-18555, 2022.11.8.)
57) 2023년도 학교돌봄터 협력사업비 추가지원 계획(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2023.4.)를 정리한 것임.

○ 학교돌봄터는 사업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1:1:2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58] 자치단체 주도로 돌봄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중구청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추가 인력 배치와 무상 급·간식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등 경직성 재정 경비가 수반되는 사항들을 추진한 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는 지자체-학교 간 우수 협력 돌봄모델을 탐색하고자 했던 당초의 학교돌봄터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중구에 추가적인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중구가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2년 만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초등돌봄교실 직영 운영 중단까지 검토한 것과 관련하여[59] 서울시교육청도 학교돌봄터 사업의 주요 주체로서 사업 관리에 실패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연계 관련 업무 운영에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더욱이 동 예산 편성은 결과적으로 중구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다른 일반 초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재원을 받아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만큼, 학교돌봄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치구와 형평

---

58) 「「학교돌봄터 사업」 지자체 선정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89호)에 첨부된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안)」(관계부처 합동, 2021.1.29.)에 따르면,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은 "복지부(국고), 교육청(지방비), 지자체(지방비)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비(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되 분담비율은 시군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59) 경향신문(2022.9.15.), 만족도 99% '중구형 초등돌봄' 왜 직영 중단하나,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9152117005 (검색일 2023-6-15)
Btv 서울뉴스(2022.9.15.), [B tv 서울뉴스] 중구, 초등돌봄센터 직영 폐지 추진…학부모 반발,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146114 (검색일 2023-6-15) 등 참조

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학교돌봄터운영협력’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학교돌봄터 사업의 근본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즉각적인 편성보다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재정 분담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학교돌봄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재원 부담 방식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초등교육과-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사업별 설명자료 330~332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636,070**	**963,600**	**1,599,670**
꿈꾸는연구실구축지원	-	963,600	963,600
생각을키우는교실운영	206,000	-	206,000
서울가나다,서울구구단,서울ABC	414,210	-	414,210
협력적평가방법개선지원	15,860	-	15,860

○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사 간 협력 확대를 유도하고, 초등교육 단위의 수업·평가 혁신과 학생의 문해·수리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6억 3천 6백만원 대비 9억 6천 3백만원 증액된 16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3년 본예산안

심의 당시 전액 감액된 ‘꿈꾸는연구실구축지원’ 사업(25억 3천 9백만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 ‘꿈꾸는연구실구축지원’은 초등학교 1교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교원의 수업 연구와 학습지원을 위한 전용 연구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60] 추진으로 일반 교실의 방과후교실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공간 조성 필요성이 커졌고, 방학 일정에 맞춰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담실이나 돌봄교실 등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후관리 방안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요구액 전액이 감액된 것으로[61]

동 사업의 예산 심의시 의회가 제기했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60)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공적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1.9.),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실시…2025년 전면 확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325 (검색일 2023-6-15))

6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현장중심장학지원(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10억원, 2023년도 예산안에서 25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감액 사유에 관한 질의응답은 제315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2022.11.23.)와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교육위원회 회의(2022.8.18.)를 참조.

차) 중등교육과-원격교육지원(사업별 설명자료 348~353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29,570,791**	**105,925,581**	**135,496,372**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322,180	-	322,180
디지털환경조성	28,970,751	105,925,581	134,896,332
원격교육네트워크구축·운영	277,860	-	277,860

○ **“원격교육지원”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추진 및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교직원 연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9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1,354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디지털환경조성’은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 추진에 따른 기기 보급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부 지침에[62]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인 AI·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디벗 보급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고, 기기 보관을 위한 충전함을 중학교 2학년 교실에 확충하며,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사유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예산 규모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은 1천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과 대상 변경을 반복하면서 2021년 수립된 당초 사업계획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황입니다.**

6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교육부, 2023.2.)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 또한, 동 사업은 2023년 5월 교육부 계획과 연계하도록 중장기계획을 변경함에 따라[63] 당초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던 사업계획과 현재의 디벗 보급 계획은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디벗 보급대상과 시기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추계 역시 큰 폭의 변경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에도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였는 바, 건전 재정 구현과 예산심의 내실화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2021년에 수립되었던 당초 계획에서는[64] "2022년부터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보급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중학교 전체 보급" 만 하기로 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2022년 7월에 202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025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순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관련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65]

○ 그러나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 보급 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5월에 재차 계획을 변경하여[66]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또는 5~6학년(학교별 선택)을 대상으로 기기 보급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추경예산안이나 예산안 편성 시 매

63)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디벗」확대 변경 계획(안) (중등교육과-20739, 2023.5.26.)
64) 2022학년도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디벗」종합 실행계획(안) (중등교육과-37474, 2021.11.9.)
65) 2023 스마트기기 휴대학습「디벗」기본계획(안) (중등교육과-24995, 2022.7.12.)
66)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디벗」확대 변경 계획(안) (중등교육과-20739, 2023.5.26.)

번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9] 연도별 디벗 보급대상(대상 학년 기준)의 변화

당초 계획 (2022학년도, '21.11. 수립)	1차 변경 (2023학년도, '22.7. 수립)	2차 변경 (2024학년도 '23.5. 수립)
'22년 ▼ '24년 중1 ▼ 중학교 보급 완료 ※ 초등, 고등은 향후 검토 후 결정	'22년 ▼ '23년 ▼ '24년 ▼ '25년 중1 ▼ 중1, 고1 ▼ 초5, 중1, 고1 * ('24) 중학교 전체 보급 ▼ 초5~고3 전체 보급 완료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중1 ▼ 중1 ▼ 중1, 고1~2 * ('24) 중학교 전체 보급 ▼ 초 3~4, 고1 * ('25) 고등학교 전체 보급 ▼ 초 5~6 * 초3~고3 보급 완료

○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연 최대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근시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바,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동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2023년 5월 변경된 계획안에서 디벗 기기와 충전함 구매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 최대 3,023억 4천 3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금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안에는 동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3년도 수립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 재정계획」과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함께 변경 수립된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을 비교한 결과,

지난 5월 있었던 디벗 사업의 최종 계획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동 사업계획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표-20] 디벗 연차별 소요 예산 추계[67]

(단위 : 억원)

대상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초 등 학 교			디지털 선도학교	초3, 초4 초교 교원	초5, 초6
중 학 교	중1, 중학교 교원	중1	중1		
고 등 학 교			고1, 고2 고교 교원	고1	
예산액 합계 (편성 기준)	**594.0**	**1654.0**	**3023.4**	**1054.5**	

[표-21]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계획 중 디벗 관련 사업비 지출 전망[68]

(단위 : 백만원, %)

사업구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가율
교육사업비	당초 계획 ('22.11.)	**831,680**	**166,178**	159,333	165,130	162,807	178,232	**1.8**
원격 교육지원	변경 계획 ('23.5.)	**904,603**	**239,101**	159,333	165,130	162,807	178,232	**△7.1**

○ 한편, 동 사업은 일각에서 학생 유해 정보 노출 가능성 증가, 기계 수리 비용 등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서도[69]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67)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디벗」확대 변경 계획(안) (중등교육과-20739, 2023.5.26.), 8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68) 당초 계획은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 재정계획」 32쪽을, 변경계획은 「2023~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 32쪽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이고, 적색 표시는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수치(사항)을 임의로 표시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70] 동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응답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을 시행하기 적정한 시기 역시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이 아닌 '중학생부터'라고 응답한 비중이 조사대상 집단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2] 디벗 사업에 관한 조사대상별 응답 현황[71]

(학부모n=3,468, 교사n=609, 일반시민n=851(잘모름 제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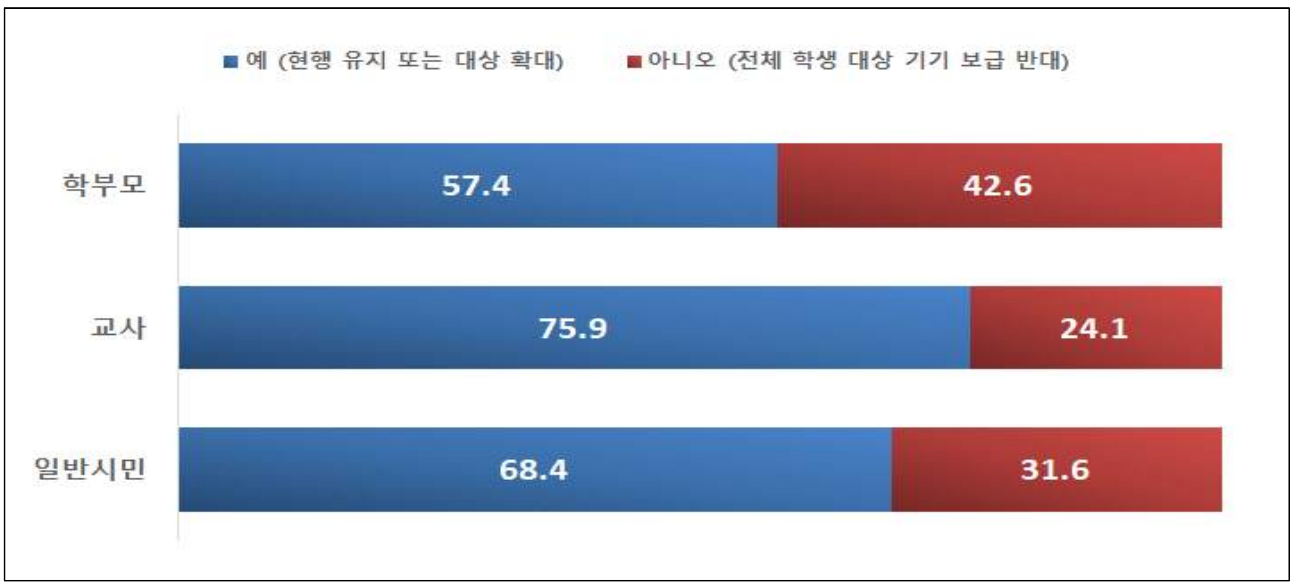

주. 일반 시민에서는 전체 1,033명 중 '잘모름' 응답자 182명을 제외, 비교 가능한 유효 응답 851명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산출함

69)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6.14.),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3.4.6.), 2022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2.11.8.),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교육위원회 회의(2022.8.18.) 등

70)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2023년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울시내 학생 2,584명과 학부모 3,468명, 중학교 1학년 담임 또는 교과 경험이 있는 교사 609명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여 1,0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시행한 것임. 설문조사 결과 및 세부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smc.seoul.kr/board/BoardList.do?boardTypeId=152&menuId=001007017001)

71) 모노리서치(2023.3.), 스마트기기 휴대학습「디벗」사업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33쪽.

[그림-3]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의 적정 시기에 대한 조사대상별 응답 현황[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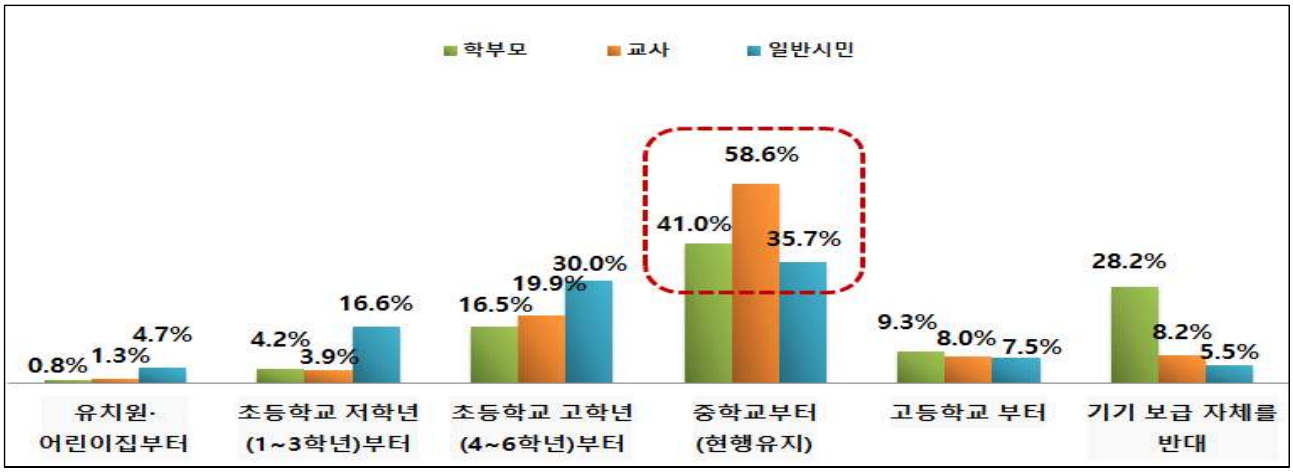

○ 본 응답 결과는 디벗 사업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 현장에서 디벗 사업 시행에 따른 우려가 상당 부분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사업대상 확대' 보다 이해관계자의 설득 내지는 사업 내실화 등에 초점을 맞춰 동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준거하여 당장의 사업 예산 편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 위의 글, 136쪽.

카) 중등교육과-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416~419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 예산 (A+B)
계	**9,684,400**	**650,000**	**10,334,400**
단위학교기본학력책임지도제	9,182,000	-	9,182,000
맞춤형학부모학습상담	-	-	-
역량강화지원	392,100	-	392,100
전환기기본학력보장프로그램	110,300	650,000	760,300

○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은 중등학교의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및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기정예산 96억 8천 4백만원 대비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03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환기 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중3 전환기 채움학기제 온라인 e-스쿨)’ 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 **‘전환기 기본학력 보장 프로그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학습보충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과 학습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는 학교급 전환이 학생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담과 기대가 증가하는 등 학생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는[73] 인식 아래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3) 전은경(2023), 학교급 전환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애착, 휴대전화 의존,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의 검증,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 그러나 이미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여러 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 교육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관내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학습지원 대상학생 1천명에게 맞춤형 보충학습과 멘토링, 자신의 학습상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탄탄 e-스쿨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이용 대상을 제외하고 공공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학생 학습지원 플랫폼과 차별화된 특성이나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서울런(서울시), EBS(한국교육방송공사), e-학습터(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도 멘토링이나 학습상황 관리, 학습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 역시 해당 서비스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중3 전환기 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과 2025년부터 학생의 학습상황을 관리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AI·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추진되는 상황에서[74]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e-스쿨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의 중복성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7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교육부, 2023.2.)

디지털 교육 관련 교육부 방침이 구체화되고, 다른 유사 플랫폼과의 차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표-22] 학생 학습지원 관련 주요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 https://slearn.seoul.go.kr/	EBS (초등, 초등온, 중학, 고교 , MATH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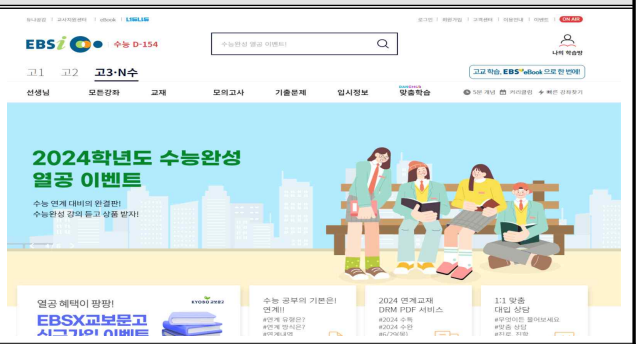
• 대상 : 서울시 거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청소년(만 6~24세, 재수생 포함) • 내용 : 온라인 맞춤형 멘토링, 교과(초중등, 검정고시) 및 비교과(자격증, 공무원, 어학 등) 학습 콘텐츠 제공	•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 및 사교육 경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기출문제·모의고사 등 제공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학습콘텐츠를 보유, 제공
e-학습터 (https://cls1.edunet.net/)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https://k-basics.org/u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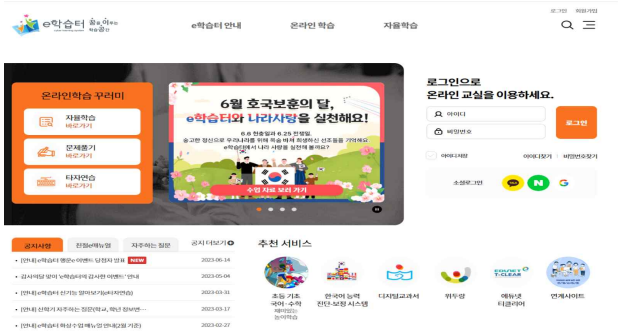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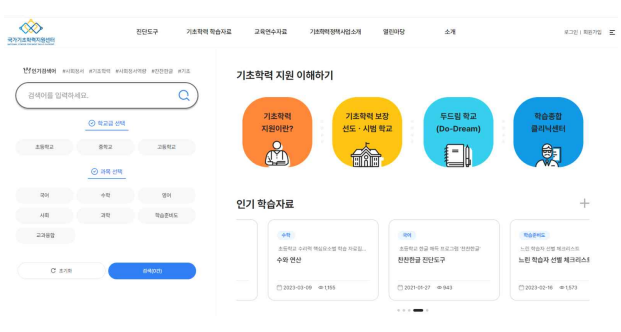
•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으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학생은 학습자료를 제공받거나 자율학습을 위한 평가, 온라인 학습 등을 진행	• 교육부 지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로,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꾸꾸) 등의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은 진단도구를 통해 진단과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자기주도 학습을 전개

3) 평생진로교육국

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학교폭력예방대책(사업별 설명자료 505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4,386,544**	**511,000**	**4,897,544**	**3,829,015**
교육법률지원단운영	1,085,146	-	1,085,146	978,823
보호관찰멘토링제운영	11,020	-	11,020	15,020
심의위원회운영	**2,854,876**	**511,000**	**3,365,876**	**2,546,79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활교육협의체 운영	104,000	-	104,000	99,000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지원	311,750	-	311,750	163,125
학생징계조정위원회운영	19,752	-	19,752	26,252

○ **“학교폭력예방대책”은 학교폭력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역 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학교 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심의위원회 운영’은 최근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실을 구축하고 음성회의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표-23] 2022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단위: 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합계**
225	341	218	334	119	326	345	309	223	176	202	**2,818**

○ 동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의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수당 및 운영 지원 예산으로 28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4개 교육지원청(동부·서부·동작관악·성북강북)에 학교폭력대책심의실 추가 구축을 위한 예산 2억 5백만원과 6개 교육지원청(동부·서부·북부·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강북)에 음성회의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3억 6백만원 등 총 5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심의실의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기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후 4주(21일 내)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연심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심의는 2022년을 기준으로 지연율이 75.3%(총 2,122건)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심의 지연율을 단축함으로써 중대한 학교 폭력 사안을 적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동 예산 편성 취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실 추가 구축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된 4개 교육지원청(동부·서부·동작관악·성북강북)의 경우 심의 지연율이 각각 63.6%, 77.7%, 84.8%, 81.2%로 심의 지연율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심의 지연율이 더 높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84.8%)이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89.0%)의 경우에는 이번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4] 2022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현황

(단위: 건, %)

지원청	사안처리 건수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미지연(4주 이내) 심의		지연(4주 이후) 심의[75]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성동광진	450	176	134	76.10%	42	23.90%
중부	334	119	52	43.70%	67	56.30%
동부	499	225	82	36.40%	143	63.60%
강서양천	788	345	118	34.20%	227	65.80%
서부	836	341	76	22.30%	265	77.70%
남부	649	218	45	20.60%	173	79.40%
성북강북	595	202	38	18.80%	164	81.20%
동작관악	436	223	34	15.20%	189	84.80%
강남서초	650	309	47	15.20%	262	84.80%
강동송파	707	326	36	11.00%	290	89.00%
북부	798	334	34	10.20%	300	89.80%
계	**6,742건**	**2,818건**	**696건**	**24.7%**	**2,122건**	**75.3%**

○ 먼저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심의실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교육지원청 모두 이미 심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부, 동작관악,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2개의 심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 중 이미 2개의 심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심의실 중 1개가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1개의 심의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75) 심의기간: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4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62, 교육부

[표-25]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실 보유 현황

지원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합계
심의실 개 수	1	1	1	2	1	1	1	1	2	2	1	13

※ 동작관악의 경우 심의실이 2개이나 1개는 활용 불가하여 인근 학교 공간에 1개실 추가 구축.

○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기준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심의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규정 내 심의율은 15.2%에 불과하여 전체 심의건수의 약 84.8%에 해당하는 189건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 규정 내 심의율이 11%에 불과하여 전체 심의건수의 89%에 해당하는 290건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바, 심의실의 설치 우선순위 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러한 점은 금번에 선정된 동부, 서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 교육지원청들은 규정 내 심의율이나 지연되고 있는 심의건수 모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예산 편성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동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민주시민생활교육과-민주시민교육강화(사업별 설명서 516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10,000**	**104,400**	**114,400**	**337,600**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	**38,330**	**38,330**	107,600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	**62,320**	**62,320**	212,500
학생봉사활동연계고령층디지털역량강화	10,000	-	10,000	-
학생봉사활동지원거버넌스구축	-	3,750	3,750	17,500

○ **“민주시민교육강화지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에게는 토의·토론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에게는 연수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주시민교육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은 초·중·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1회) 및 워크숍(1회)을 실시하고 민주시민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위해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3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생활과 연계된 주제(기후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로 학습하는 사회 현안 프로젝트 수업과 국회와 연계하여 학생 사회 참여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지원’에도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동 사업들은 지난 본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3억원)된 ‘민주시민교육강화’내 세부사업내역으로 편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과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당시 동 사업예산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라기보다 주로 수용비나 업무추진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본예산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표-26] 2023년 본예산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2023년 본예산(전액 삭감)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	편성예산	사업명	편성예산
학교 민주시민 교육지원 (사회 현안 교육 토론회,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 교재개발 등)	- 운영비: 288,300천원 - 업무추진비: 11,800천원	**민주시민 교육역량 강화 지원** (연수·워크숍, 교육자료개발)	- 운영비: 35,130천원 - 업무추진비: 3,200천원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지원 (사회 현안 강화 워크숍 등)	- 운영비: 55,480천원 - 업무추진비: 6,840천원
합계	**300,100천원**	**합계**	**100,650천원**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와 학생들의 공존형 토의토론 교육을 위해 학교급에 맞춘 민주시민교육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의무·책임을 이해하는 가치관 형성을 위해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예산 3천 8백만원 중 위탁운영비가 2천만원으로, 이러한 위탁운영비의 70.5%를 교육자료 인쇄비가 차지하고 있고,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예산 6천 2백만원 중 위탁운영비가 2천만원으로, 동 위탁운영비의 43.5%가 시설 임차료·직접 인건비(관리자·운영자)가 차지하는 등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 내용의 일부만 변경하여 위탁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민주시민교육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생봉사활동지원거버넌스구축’의 경우에도 본예산안 심의시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예산규모만 축소하여 그대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한다면 추경예산안 편성 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동일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7] 202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위탁운영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용역명	구분		산출내역	금액
민주시민 교육자료 개발·보급 위탁용역	원고료		14,000원×20매×6명×3종	5,040
	인쇄비		4,700,000원×3종	14,100
	배송료		860,000원×1식=	860
계				20,000
국회 연계 서울학생 참여한 마당 위탁용역	직접 경비	강사비	350,000원×4명×1회	1,400
		시설 임차료 (온라인 장비 포함)	4,900,000원×1회	4,900
		참가자 기념품비	10,000원×120명×1회	1,200
		자료집 인쇄	10,000원×120권×1회	1,200
		참가자 간식비	5,000원×120명×2회	1,200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비	500,000원×1식	500
	직접 인건비		관리자 300,000원×1명×2회 운영자 200,000원×8명×2회	3,800
	제경비		3,300,000원×1식	3,300
	기술료		690,000원×1식	690
	부가가치세		1,810,000원×1식	1,810
계				20,000

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세계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별 설명서 521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 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58,710**	**60,000**	**118,710**	**168,710**
세계시민교육과정개발	**-**	**60,000**	**60,000**	90,000
세계시민 교육역량 강화 지원	58,710	-	58,710	78,710

○ **“세계시민교육역량강화”는 세계시민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 및 탈북 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은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시민 교육과정을 중점 연구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초·중·고 각 1교를 대상으로 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본예산 심의시 총 3개교(초·중·고 각 1교)에 총 9천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 방식(학교 회계 전출금)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학교급별(초·중·고 각 1교) 지원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총 6천만원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표-28] 2023년 본예산 및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

2023년 본예산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 내용**
세계시민 혁신학교 운영	- 기간: 2023.3.~2024.2. - 대상: 초·중·고 - 내용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	- 기간: 2023.7.~2024.2. - 대상: 3교(초·중·고 각 1교) - 내용

	● 세계 시민학교 운영지원 ● 혁신 교육 기반 세계 시민교육 실천 역량 신장 및 네트워크 구축		● 학교급별 세계시민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교과별 교육 과정 분석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학교 회계 전출금	- (공립) 목적사업비: 30,000천원×1교 - (사립) 목적사업비: 30,000천원×2교	학교 회계 전출금	- (공립)목적사업비: 20,000천원×1교 - (사립)목적사업비: 20,000천원×2교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시 및 행사 위주의 세계시민 교육이 아닌 현장 적용이 가능한 세계시민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급별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교육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76)을 살펴보면, 목표를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 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금번 서울시교육청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표-29]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교육 목표 및 내용 기준(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여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출처: 교육부

○ **더욱이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개별학교에 예산을 전출하여 학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 **특히 서울시 전체 초·중·고 약 1,300여교 중 단 3개교만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동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의문인바, 동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6) 교육부, '2022 개정 교육 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2021.11.24.

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인권교육활성화(사업별 설명서 524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 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	294,140	294,140	618,325
학생인권증진지원	-	104,030	104,030	268,840
노동인권증진지원	-	172,760	172,760	262,970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	17,350	17,350	86,515

○ “인권교육활성화”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과 학생을 위한 인권토론 공연을 실시하는 ‘학생인권증진지원’ 1억 4백만원, 교원과 학생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노동인권증진지원’ 1억 7천 3백만원, 학생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천 7백만원 등 2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의시 ‘학생인권증진지원’ 3억 4천 1백만원, ‘노동인권증진지원’ 3억 2천 6백만원,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7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증진을 통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등 관련 필수 사업추진을 위해 동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토론공연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각 15교씩을 선정하고 인권토론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바, 일회성 공연 관람이 학생인권 증진에 얼마나 지속적·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2021~2022년 학생 인권토론공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184개교의 학생 38,762명에게 1억 5천만의 예산으로 공연 관람을 추진하였는바,

학교급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효과[77]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단체와 동일한 공연을 지적으로 추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성 특혜 예산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0] 2021~2022년 '인권토론 공연' 추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용역명	학교 수 (인원)	공연내용	선정업체	계약방식	계약금액
2021	랜선을 타고 찾아가는 학교 인권 토론 공연	75개교 (14,002명)	하얀마음 하얀이	㈜브○○ 컴퍼니	수의계약[78] (사회적기업)	35,600
	중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인권 토론 공연	17개교 (4,034명)	하얀마음 하얀이	㈜브○○ 컴퍼니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36,533
2022	랜선을 타고 찾아가는 학교 인권 토론 공연	75개교 (16,060명)	하얀마음 하얀이	㈜브○○ 컴퍼니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39,000
	중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인권 토론 공연	17개교 (4,666명)	하얀마음 하얀이	㈜브○○ 컴퍼니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39,600
합계		184개교(38,762명)				150,733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실적이 없음.

77) 서울시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 활동지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활동자료를 구분하여 개발하였음.

7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먼저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방식 등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 사업을 통해 그동안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향후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특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추경예산안을 통해 다시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이해도 없이 동일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본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을 추경을 통해 편성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인바, 시급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1] 2023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 증진' 기본 계획

■ **2022년도 운영실적 및 평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인권(토론) 공연 운영 현황		평가 및 제언
○ **(내용)** '하얀 마음 하양이' 공연 관람(약 60분)+인권 토론(약 20분) ○ **(초등)** 온라인 75개교(약16,060명), 만족 이상 학생 89%, 교원 99% ○ **(중등)** 현장 공연 17개교(약4,666명), 만족 이상 학생 93%, 교원 100%	⇨	○ 공연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음 ○ **유사 수준의 공연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 규제 완화로 **초등도 현장 공연 적용** 필요

가.~라. (생략)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생략)

3)「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6) (생략)

바. (생략)

6.~8. (생략)

■ **2023년도 운영 계획**

1) 대상: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15교
2) 운영 방법: 학교 방문 공연
3) 운영 기간: 2023. 6월~11월
4) 운영학교 선정 기준
 - 2021, 2022년 학교로 찾아가는(랜선으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미운영교 우선 선정
 - 기타 학교 특성 및 교육여건 상 필요한 학교에 지원 예정
5) 비고: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변동 운영될 수 있음

[표-32] 2023년 본예산·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인권토론 공연'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 예산	
	2023년 본예산	2023년 추가경정 예산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 공연	- **운영비** · 편집 및 인쇄비 10,000원×100부=1,000천원 · 임차료 1,000,000원×1회=1,000천원 · 행사용품비 400,000×2회=800천원 · 인권토론공연 심사수당(공연단 선정) 150,000원×7명×1회=1,050천원 · 인권토론공연 프로그램 운영비 40,000,000×2종=80,000천원 - **업무추진비** · 학생인권교실 업무협의회비 20,000원×20명×2회=800천원 · 인권토론공연 업무협의회비 20,000원×10명×2회=400천원	- **운영비** · 인권토론공연 위탁운영비 80,000,000원×1종=80,000천원 · 원가조사수수료 440,000원×1회=44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00,000원+50,000원)×7명×1회=1,050천원
합 계	85,050천원	81,490천원

마) 민주시민생활교육과-통일교육활성화지원(사업별 설명서 530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 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5,000**	**149,365**	**154,365**	**62,800**
교원통일교육역량강화지원	**-**	**30,940**	**30,940**	-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5,000	-	5,000	5,000
학교통일교육활성화지원	**-**	**118,425**	**118,425**	42,400
통일 교육협의체 운영	-	-	-	15,400

○ **“통일교육활성화지원”은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 현장 체험을 통해 남북 분단 현실을 인식시켜 통일 안보 의지를 제고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현황에 맞는 통일교육 우수 수업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원통일교육역량강화지원’ 3천 1백만원,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중심 견학 프로그램 제공과 학교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사례를 공유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한 ‘학교통일교육활성화지원’ 1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본예산 심의시 통일안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사업에 4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학생체험 중심 통일교육과 통일교육 전문가 및 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일교육협의체 등을 운영하기 위한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에 따른 사업추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시 ‘화해와

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 사업 중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사업’ 예산 5백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비한 미래세대의 건전한 안보관 확립과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사업 중 ‘학교통일교육 활성화지원’의 경우 지난 본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유사한 사업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 굳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동 사업과의 차별성이 그리 크지 않고, 특히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만큼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그 근거규정인 조례마저 폐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통일교육 사업계획이 마련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3] 2023년 본예산·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

2023년 본예산(특별교부금)		202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비특별회계)		
학교전인적교육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프로젝트 수업실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한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초·중·고 10학급)	통일교육 활성화지원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50학급)와 프로그램 지원(강화평화전망대, 평택서해수호관), **통일교육실천사례집** 제작
학교통일교육 활성화지원	·학교회계전출금 - 목적사업비(공립): 8,000천원 - 목적사업비(사립): 2,000천원	학교통일교육 활성화지원		- 학교로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 : 103,225천원 - 통일교육실천사례집 제작 : 15,200천원
사업내용	○ **주요내용** -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실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학급 또는 팀 (동학년 또는 교과	사업내용		○ **주요내용** - 현장체험중심의 견학 프로그램 운영 - 통일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과 버

		통합 등) 단위의 통일 교육 활동 지원 ○ **대상:** 초·중·고 10학급(팀) ○ **내용:** 협력과 참여, 체험, 토의·토론 등 학생 활동중심의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스 지원 - 초·중·고등학교 희망 학급을 선정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희망학급 50학급(1,200여명) ○ **장소:** 강화평화전망대 또는 평택서해수호관
합 계		10,000천원	합 계		118,425천원

바) 진로직업교육과-특성화고지원(사업별 설명서 544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1,028,540**	**2,040,320**	**3,068,860**	**1,035,020**
AI교육환경구축지원	120,000	-	120,000	120,000
산학협력사업추진	500,000	-	500,000	500,000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	**2,040,320**	**2,040,320**	**-**
특성화고등학교홍보	308,540	-	308,540	315,020
특성화고 맞춤형 사회적가치교육지원	100,000	-	100,000	100,000

○ **“특성화고지원” 사업 중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사업은 제3기 교육감 공약사업(1-6-2, 특성화고 발전 지원)으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접목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20억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현재 마이스터고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와 달리 산업수요에 맞춘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사업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상향 발전[79]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년에 10교, 2024년에는 20교의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 뒤 2025년부터 64교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80]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직업교육선도모델 구축 지원비 20억원(10교, 교당 2억원) 및 선도학교 컨설팅·연수비와 성과관리시스템 지표 개발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장에서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미래 직업수요에 기반한 특성화고 교육력 강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기본 계획[81]'의 예산집행 기준을 보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강화 부분, 취약 부분 등에 선택적 집중 투자'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동 사업예산의 학교에 교부되는 예산액이 적지 않은 만큼 단위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수업 및 디지털 기반 교육, 산·학·관 협력 체제, 영마이스터 인증제 등을 특성화고에 적용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80) 보도자료: 조희연 교육감 "2025년까지 64개 특성화고,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세계일보, 2023.3.14.)
81) 진로직업교육과-1529, 2023.2.21.

사) 진로직업교육과-맞춤식진로교육(사업별 설명서 555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5,335,300**	**314,100**	**5,649,400**	**5,309,150**
서울진로직업박람회	601,300	-	601,300	601,300
진로교사역량강화	75,960	2,000	77,960	72,960
진로교육센터활성화	549,150	-	549,150	641,950
진로연계교육선도학교운영	-	**312,100**	**312,100**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지원	3,825,180	-	3,825,180	3,709,230
학생맞춤형진로체험지원	283,710	-	283,710	283,710

○ **“맞춤식진로교육” 사업 중 ‘진로연계교육선도학교운영’ 사업은 학교급 전환시기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적응 중심의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 1천 2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진로연계교육’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 중3, 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82]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60교, 교당 5백만원)과 선도학교 소속 교원 협의체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비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12월 22일 고시[83]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 설계, 학습 방**

82) ‘2023학년도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계획’(진로직업교육과-1247, 2023.2.13.)
83)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법 및 생활 적응 등을 위한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였는바[84] 학교급 전환시기 학생들의 상급학교 학습 준비도 향상 및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지원 측면에서 동 사업의 취지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34] 서울시교육청 진로연계교육 운영 계획 중 예산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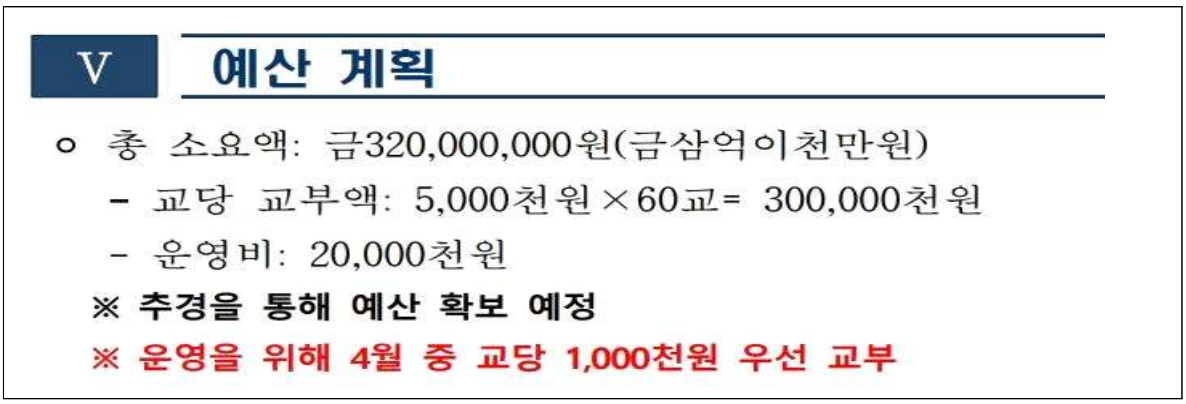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2월 '2023 진로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선도학교에 1백만원의 예산을 우선 교부하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3월에 선도학교 선정 뒤 4월에 선도학교 58교에 교당 1백만원의 예산을 '진로멘토링운영비'에서 이미 교부하였는바,

동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관련 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 및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84) 『2022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교육부, 2022.12.22.)

아) 특수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별 설명서 612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1,155,500**	**209,725**	**1,365,225**	**1,459,150**
보이스아이 유지보수	3,000	-	3,000	17,350
순회교육운영	248,300	-	248,300	124,150
시설설비개선 및 교구기자재구입	**88,000**	**209,725**	**297,725**	**484,710**
운영비지원	790,550	-	790,550	807,290
특수교육실무사 연수	25,650	-	25,650	25,650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사업 중 ‘시설설비개선및교구기자재구입’ 사업은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로 ‘본원과 분원으로 분리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통합 이전 후, 통합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개선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3년 2월 10일 준공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예산을 재배정받은 남부교육지원청은 2022년 12월 28일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사고이월 처리를 하지 않아 원인행위액 2억 1천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남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2월 28일 남부교육지원청의 다른 예산(학교시설환경개선)을 사용하여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뜻하지 않게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부족해진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당초 불용처리되었던 2억 1천만원을 그대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를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개선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예산안 심의자료의 허위 보고는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케 하고 이는 결국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교육행정국

가) 학교지원과-학교신설(사업별 설명자료-630쪽)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1차 추경예산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편성안	확정액			추경증감 (B-A)	추경예산 (B)
계	50,405	50,405	0	50,405	31,333	81,739
공 립 유	14,672	14,672	0	14,672	1,351	16,023
공 립 초	35,571	35,571	0	35,571	64	35,634
공 립 중	162	162	0	162	198	361
공 립 특 수	0	0	0	0	29,720	29,720
공 립 고	-	-	-	-	-	-

○ **‘학교신설’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서울 지역에 발생하는 학교 설립 수요를 충족하고 급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본예산에 504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313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동 사업의 공립유치원 중 남산초병설유치원는 지난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2022.4.8.)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당시, 대상 사업비가 82억 1천 8백만원이었으나 이후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 사업비가 88억 7천 1백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족분 6억 5천 3백만원, 미편성분 5억 4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동 사업 중 위례솔초등학교와 위례솔중학교는 지난 제20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2019.12.16.)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당시,

대상 사업비가 각각 255억 1천 2백만원과 239억 9천 9백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위례솔초는 6천 4백만원, 위례솔중은 1억 9천 8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실제 예산안 상의 소요액 차이에 대해 남산초병설유치원의 경우 온종일돌봄 유치원 신설을 위한 시설비가 증액되었고, 위례초 및 위례중의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금 청구 지연에 따른 건설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표-35] 학교신설 사업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후 추경안 증액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사업내용	총사업비[85] (A)	추경안 증가액 (B)	서울시의회 심의결과			
				구분	의결일	사업비	처리 결과
1	위례솔 초등학교	31,242,907	63,695	2020. 정기분 (제290회정례회)	2019.12.16	25,512,245	가결
2	위례솔 중학교	27,629,195	198,426	2020. 정기분 (제290회정례회)	2019.12.16	23,999,400	가결
3	(가칭)서울남산 초등학교병설 유치원 신설	8,871,305	653,343	2022. 1차 수시분 (제306회임시회)	2022.4.8.	8,217,962	가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동 계획에는 사업목적과 용도, 사업기간, 사업규모, 계약방법 이외에도 소요예산이나 기준가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있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즉 사업규모에 비해 사업예산이 과도할 경우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

85)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사업비

고, 향후 학생 수요 추이를 분석하여 사업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 규모를 확증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있어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상기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면적이나 예산규모가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재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된 법령상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것으로,[86] 이는 결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예산의 증액 편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당시 누락되었던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시설면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86)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교육재정과-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사업별 설명자료 652쪽)

(단위: 천원)

구분	본예산		1차 추경예산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편성안	확정액			추경증감 (B-A)	추경예산 (B)
계	1,900,000	1,900,000	0	1,900,000	6,460,000	8,360,000
공·사립학교 운영비지원	1,900,000	1,900,000	0	1,900,000	6,460,000	8,360,000

○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운영비지원’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우수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동안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60억원)과 서울시(30억원)가 총 90억원의 재원을 분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시간을 단계별 구간으로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금년부터는 시설개방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는바[87],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비 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 사업비의 증액은 예산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개방의 재정부담 주체를 오롯이 서울시교육청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7) ‘2023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안)’,서울시 평생교육국(2022.10.)
-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2022예산 2,100백만원, 2023예산(안) △2,100백만원

[표-36] 최근 5년간 학교시설개방 인센티브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청 인센티브	편 성	6,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	**1,900,000**
	집 행	5,988,870	5,999,609	5,999,779	1,694,000	**1,664,000**
서울시 시설보수비	편 성	3,000,000	3,000,000	3,000,000	2,100,000	**2,100,000**
	집 행	2,994,144	2,999,920	2,999,998	1,042,000	**785,000**
합 계	편 성	**9,000,000**	**9,000,000**	**9,000,000**	**5,100,000**	**4,000,000**
	집 행	**8,983,014**	**8,999,529**	**8,999,777**	**2,736,000**	**2,449,000**

○ 한편 그동안 동 사업비는 학교운영비로 교부되어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부방식을 학교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따른 운영비지원이 시설개방으로 인한 학생의 시설이용 제한과 교육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연수·복지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일부 구성원을 위한 교부방식의 변경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예산 수혜의 부수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시설개방에 대한 지급기준을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구간별 지원액이 가장 낮은 5구간은(50시간 이상) 최소 월 평균 4.1시간(50시간/12개월) 이상만 학교를 개방하면 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1천 4백만원)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월 평균 4.1시간은 주 1시간에 불과한 수준인바, 이러한 운영비 지원은 동 사업이 학교시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단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교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 동 사업은 시행된지 6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시설 개방의 확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개방 학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지원 확대만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예산 확보에만 노력하고 있는바,

동 사업비 증액은 사업의 운영방식 및 재정의 효율성 등 근본적인 사업추진의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개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이와 같은 인센티브와 동시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함으로써 학교시설개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7] 2022년 인센티브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개방시간	학교 수 (A)	학교별 지원금액			지원금액 총 계 (E=A×D)
			인센티브 (B)	시설보수비 (C)	소 계 (D=B+C)	
1구간	401시간 이상	24	16,000	16,000	32,000	768,000
2구간	301시간 이상 400시간 이하	12	13,000	13,000	26,000	312,000
3구간	201시간 이상 300시간 이하	19	10,000	10,000	20,000	380,000
4구간	101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31	8,500	8,500	17,000	527,000
5구간	50시간 이상 100시간 이하	33	7,000	7,000	14,000	462,000
총 계		119				2,449,000

다) 교육시설안전과-안전관리(석면제거)(사업별 설명자료-690쪽)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1차 추경예산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편성안	확정액			추경증감 (B-A)	추경예산 (B)
계	47,500	14,089	33,411	47,500	31,200	78,700
안전관리(석면제거)	47,500	14,089	33,411	47,500	31,200	78,700

○ **‘석면제거’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88]에 따라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학교내 석면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본예산에 140억 8천 9백만원, 1차 추경예산에 334억 1천 1백만원 등 기정예산에 475억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3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석면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장시간이 소요되고 공사과정에서의 비산 등 안전성의 이유로 주로 방학중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주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현재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475억원은 대부분 집행이 되지 못한 상황인 바, 이런 상황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새롭게 31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의 조건인 연내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88)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한편 2022년도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의 석면제거 예산은 310억 9천 7백만원으로 이 중 88.8%인 276억 3천 7백만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이는 추경안을 포함한 금년도 석면제거 예산에 비해 약 476억원이 적은 것으로, 2022년도의 경우 석면제거 사업이 교특회계 이외에 기금사업으로도 추진되어 기금사업의 경우 357억 2천 7백만원이 별도로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표-38]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석면제거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계획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8,358,923	35,727,367	83,157,712	9,473,844
교육비특별회계	31,097,136	27,637,432	2,119,877	1,339,827
전체	159,456,059	66,824,503	85,277,589	10,813,671

○ 그러나 금년의 경우 교육시설환경기금에서 석면제거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동 사업은 교특회계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전년도 석면제거 총 사업비(교특회계 편성액+기금 지출액) 668억과 비교하면 금년도 동 사업비는 약 11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석면제거 사업이 학생의 보건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사업전 준비과정에서부터 사후 청소까지 석면제거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석면제거 사업 추진과정에서 석면제거 후 잔재물 청소나 보고서 조작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한 석면제거라는 목표량 달성만을 위해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일말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석면제거 업체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체에 대한 용역비 회수, 부정당업체 지정, 형사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89]

89) 시사저널(2023.1.2.). “서울시교육청, 학교 석면관리 부실로 예산 5억원 날렸다”, 시사저널(2023.1.9.). “서울 D중학교, 석면 제거 공사 보름뒤 석면 검출… 서울시교육청 관리 부실도 노출‘, SBS(2023.6.14.). ‘학교 석면 엉터리 해체…정상이라며 보고서 조작’.

5) 직속기관-학생체육관(체육연수지원(사업설명서 823쪽))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기정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계	**340,127**	**341,360**	**681,487**	**247,667**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지원	300,350	50,600	350,950	208,000
수상안전스킨스쿠버 교육지원	-	**290,760**	**290,760**	-
직무연수	39,777	-	39,777	39,667

○ **“체육연수지원” 사업 중 ‘수상안전스킨스쿠버교육지원’은 초등 4학년~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9천 1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스킨스쿠버교육은 1회 최대 30명, 1회에 3시간, 총 3회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차 교육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90] 교육비 외에 교육생 수송 버스 임차료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스킨스쿠버교육은 다양한 수상활동 체험을 통해 학생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나,**

현재 이미 생존수영의 의무화를 통해 수상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단편적인 스킨스쿠버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 **특히 이 사업이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로 편성되어야 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추경심사의 기준에 비추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0) 추경예산안 중 교육비: 1명 1회 90천원 * 30명 * 90회(1교당 3회) = 243,000천원

[표-39]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생존수영 관련 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	담당부서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	초등 3, 4학년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수상안전체험교육	중·고등학생	학생교육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교육	초등 5, 6학년, 중·고등학생	학생체육관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Ⅷ.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전원 찬성)

Ⅸ. 부대의견 : 없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 총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13,553,736,151	13,553,736,151	0
세 출	13,553,736,151	13,553,736,151	0

□ 세출감액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교육과정운영지원	71,612,350	71,492,350	△120,000	o 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
특색교육과정운영	30,373,430	30,125,760	△247,670	o 학교제안공모사업운영
현장중심장학지원	14,824,535	13,860,935	△963,600	o 꿈꾸는연구실구축지원
ICT활용교육지원	171,747,726	93,256,901	△78,490,825	o 원격교육지원 (디지털환경조성)
학생생활지도지원	1,569,605	1,130,995	△438,610	o 민주시민교육역량강화지원 외 3건
학 생 안 전 관 리	1,816,390	1,794,390	△22,000	o 자기계발시기학생대상 심폐소생술교육
진로진학교육운영	7,095,218	7,035,218	△60,000	o 진로연계교육선도학교운영
교 과 서 지 원	59,276,702	58,746,702	△530,000	o 초중학교교과용도서재고위탁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1,172,555,413	1,171,484,737	△1,070,676	o 서라벌중 외부창호개선 등 4건
교육정책기획관리	1,281,136	1,276,136	△5,000	o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기관시설유지관리	65,503,120	62,616,760	△2,886,360	o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청사외부창호교체 등 4건 o정독도서관사무실환경개선등4건
합 계	**13,553,736,151**	**13,468,901,410**	**△84,834,741**	

□ 세출증액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내 부 유 보 금	0	84,834,741	84,834,741	o 내부유보금
합 계	13,553,736,151	13,638,570,892	84,834,741	